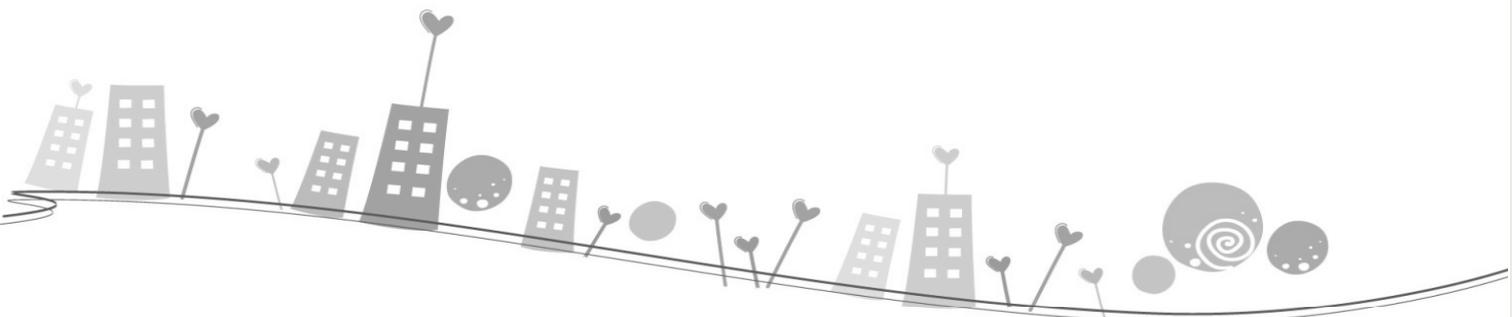


차례 CONTENTS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안내서 개요	1
I. 정책영역별 성평등 목표	3
1. 성평등에 대한 다양한 접근	5
2. 성평등의 영역	8
3. 성평등 영역별 젠더 의제	14
4.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5대 성평등 목표	23
5. 정책영역별 성평등 목표	27
II. 정책·사업의 성별특성에 따른 젠더분석틀	29
1. 남성(수혜자) 집중 사업	31
2. 여성(수혜자) 집중 사업	32
3. 외형상 성 중립적 사업	33
III. 정책·사업 영역별 컨설팅 가이드라인	37
1. 고용(교육, 산업·중소기업)	39
2. 농림수산(농림, 해양수산)	43
3. 복지(사회복지)	47
4. 지역개발·안전(지역개발)	51
5. 문화·정보(문화체육관광)	53
6. 의사결정(공공행정)	56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안내서 개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부처가 성평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 시행, 평가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2년 3월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2011.9.15. 제정)되면서 분석평가 대상이 사업에 이어 계획과 법령으로 확대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을 통해 전문가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는 성 주류화 조치의 일환으로서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도적으로 강화되면서 성평등 개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합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성평등은 지난 30여 년간 우리사회가 추구해 온 가치이지만 사회 환경이 변화하면서 성평등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이해는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안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들이 정책영역별 성평등 목표, 정책의 성별특성, 원인진단 및 개선방안을 공유하여 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안내서는 I 장 정책영역별 성평등 목표, II 장 분석대상 정책의 성별 특성과 젠더 분석틀, III 장 정책영역별 컨설팅 가이드라인으로 구분된다.

구 분	내 용
<p>I. 정책영역별 성평등 목표</p>	<p>I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책영역별 성불평등 문제와 이슈를 확인하고, 정책 개선 목표로서 성평등의 방향 및 개념 형성을 위한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의 기준으로서 성평등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대상정책을 분석평가하는 관점이자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준거로서 성평등 목표가 필요하다. 정책 영역별 성평등 목표는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도출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에 대한 국내외 접근 방식의 검토 ▶ 성불평등의 주요 영역 및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의 영역에 대한 국내외 논의 검토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성평등 목표 도출 ▶ 정책영역별 하위 성평등 목표 도출
<p>II. 정책·사업의 성별 특성에 따른 젠더 분석틀</p>	<p>II장은 정책수혜자의 성별 분포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정책·사업이 성평등에 미치는 효과는 수혜자의 성별분포를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단순히 남성과 여성 수혜자 수의 균형을 맞추는 산술적·기계적 접근은 한계가 있다. 불균등한 성별분포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구조, 제도, 규범, 절차 등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분석대상 정책·사업 수혜자의 분포를 기준으로 남성 수혜자 집중 사업, 여성 수혜자 집중 사업, 외형상 성중립적 사업 등 세 범주로 구분하고 불균등한 성별분포가 나타나는 원인과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했다.</p>
<p>III. 정책·사업 영역별 컨설팅 가이드라인</p>	<p>III장은 I장과 II장의 논의를 종합하여 컨설팅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6개 정책영역별(고용, 농림수산, 복지, 지역개발·안전, 문화정보, 의사결정)로 제시한다. 정부의 정책영역은 이보다 더 포괄적이고 다양하지만, 우리 사회의 성불평등 문제해결에서 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컨설팅 대상 정책·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구체적인 점검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성평등 목표의 확인 ▶ 2단계 : 사업의 성별특성 확인 ▶ 3단계 : 원인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체크포인트의 적용



I. 정책영역별 성평등 목표



- 1. 성평등에 대한 다양한 접근
- 2. 성평등의 영역
- 3. 성평등 영역별 젠더 의제
- 4.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5대 성평등 목표
- 5. 정책영역별 성평등 목표



I. 정책영역별 성평등 목표

1 성평등에 대한 다양한 접근

성평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 마디로 쉽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성불평등 문제에 대한 합의와 공감대가 국가마다,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안내서에서는 성평등에 대한 이론적 차원의 접근과 한국적 맥락에서의 접근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 가야 할 성평등 목표와 젠더의제를 구체화하였다.

가. 성평등에 대한 이론적 차원의 접근

이론적 차원에서 성평등은 첫째, 같음(sameness)으로서 성평등(균등기회·균등 처우), 둘째, 차이(difference)의 인정으로서 성평등(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 셋째, 변혁(transformation)으로서 성평등(성별화된 관행과 기준의 변화)으로 구분된다.

▶ 같음으로서 성평등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과 배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법·제도의 측면에서 동등한 기회와 처우를 명시함으로써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 차이의 인정으로서 성평등

생물학적 성별 또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성별의 차이를 인정·존중함으로써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 고유의 임신·출산 능력과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돌봄 역할이 취업이나 정치적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이 해당된다.

▶ 변혁으로서 성평등

변혁으로서 성평등은 남성을 표준으로 한 법·제도·규범·문화를 변화시킴으로써 평등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론상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비롯한 성 주류화 접근은 변혁으로서 성평등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성평등 관점에서의 행정개혁”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1995년 북경행동강령은 세계 각국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젠더 관점을 고려”할 것을 선언했다. 이는 성불평등 문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은 여성정책 전담부서 뿐 아니라 정부의 모든 기관과 공무원에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그 이면의 가정은 잘 알려진 대로 성평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일반 정책들이 성불평등 문제에 의도하지 않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찾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의 절차와 과정을 개혁하는 것이 곧 성 주류화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인지 교육, 성별분리통계, 성인지 예산제도 등과 함께 대표적인 성 주류화 도구이다.

세 발 걸상(a three-legged stool)의 은유

부스와 베네트는 세 발 걸상(a three-legged stool)의 은유를 통해 성평등에 대한 세 가지 접근의 상호의존성을 개념화한 바 있다. “실질적 평등”은 차별과 배제가 없는 균등기회·처우, 여성이 남성과 다른 상황에 있음을 고려한 여성지원 정책,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성을 표준으로 하는 제도·문화·관행을 변화시켜 나가는 성 주류화 접근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Booth, Christine and Cinnamon Bennett(2002), pp. 127-144를 참조할 것]

나. 국내에서의 성평등 접근

국내에서 성평등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정의는 양성평등기본법과 동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는 “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성평등 목표는 ① 성별 격차 해소 ② 일과 가정의 조화 ③ 차이와 인권의 존중이다.

기본법과 이에 근거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은 같음, 차이, 변혁 등 평등에 대한 세 가지 접근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본법에서의 양성평등은 같음(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과 변혁(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중심으로 정의된다.

기본계획은 같음(성별격차 해소)과 변혁(일과 가정의 조화) 뿐 아니라 차이의 인정으로서 성평등(차이와 인권의 존중)을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평등은 다차원적 개념으로 사회의 영역에 따라 성불평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재생산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성평등을 위한 영역의 구분은 해결해 나가야 할 핵심적인 성불평등 문제 영역들을 정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성격차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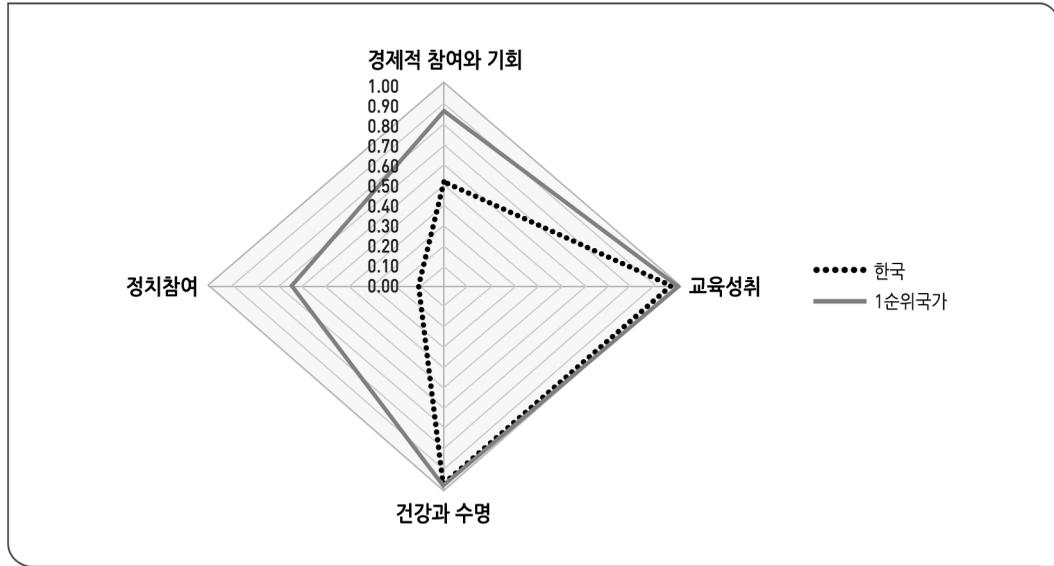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 지수(GGI: Gender Gap Index)는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에서의 성별 격차를 측정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성격차 지수는 경제, 교육, 건강, 정치 등 4개의 영역으로 측정된다.

- ① 경제 참여와 기회(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 ② 교육적 성취(Educational Attainment)
- ③ 건강과 수명(Health and Survival)
- ④ 정치참여(Political Empowerment)

2014년 성격차 지수 측정결과 한국은 조사대상 142개국 중 117위로 하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이 특히 취약한 영역은 정치참여와 경제활동 영역으로 교육이나 건강·수명 영역에 비해 월등히 지수값이 낮다. 이는 한국 여성이 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경제력의 측면에서 특히 취약하며, 우리 사회의 성평등 증진을 위해서는 이 두 영역에서의 평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경제영역에서의 성평등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와 성별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가능해 질 수 있으며, 정치영역에서의 성평등은 국회의원과 장관 등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리에 여성의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가능해 질 수 있다.

■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 지수 영역별 한국의 위치 ■



성격차 지수는 사회의 가치있는 자원의 배분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폭력, 돌봄의 분담 등 여성의 지위를 취약하게 하는 영역의 지수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영역	하위 영역	한국순위	1순위 국가(점수)
전체		117위 (0.6403)	아이슬란드 (0.8594)
경제 참여와 기회 (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남성대비) 여성 임금(남성대비) 전문·관리직 여성 비중(남성대비)	124위 (0.5116)	브룬디 (0.8630)
교육적 성취 (Educational Attainment)	여성 문해율(남성대비) 여성의 고등교육 취학률(남성대비)	103위 (0.9648)	호주 등 24개국(1.000)
건강과 수명 (Health and Survival)	출산율 성비(남성대비) 여성의 건강수명(남성대비)	74위 (0.9730)	아르헨티나 등 35개국 (0.9796)
정치참여 (Political Empowerment)	의회 내 여성비율(남성대비) 행정부 내 여성비율(남성대비) 여성최고통치권자의 재임기간(남성대비)	93위 (0.1117)	아이슬란드 (0.6554)

(출처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4, pp.4-11, 재구성)

나. EU의 성평등 지표

EU 가입국의 성평등 수준 측정을 위해 EU 성평등 연구소 EIGE(Equality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가 개발한 성평등 지표(Gender Equality Index)는 다음과 같이 8개로 성평등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 ① 일 : 노동시장 참여, 참여 영역의 수평적·수직적 성별 분리, 일자리의 질적 수준에서의 성별 격차 문제
- ② 소득 : 경제적·재정적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의 문제, 노동시장 참여, 경제적 자산, 공적 이전 등에 대한 성별화된 접근으로 인해 소득의 성별격차가 발생하며, 남성에 비해 취약한 여성의 빈곤위험의 문제
- ③ 지식 : 교육기회에 대한 접근의 성별 차이와 분리. 여학생과 남학생의 전공 선택에서의 성별분리의 문제
- ④ 시간 :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 여가시간과 공동체 참여 활동을 위한 시간 등 시간이용에서의 성별격차의 문제
- ⑤ 권력 : 정치, 경제, 사회 등 실질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성별 대표성과 권력의 공유
- ⑥ 건강 : 생물학적 차이와 재생산 건강, 여성과 남성의 다른 삶의 방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건강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 ⑦ 교차적 불평등 : 여성과 남성 각각의 내적 이질성에 대한 관심.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인종, 종교, 혼인상태, 장애, 성적 정체성 등 다양한 집단 내에서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의 차이의 문제
- ⑧ 폭력 : 폭력 근절. 신체적·물리적 폭력 뿐 아니라 여성성에 대한 혐오와 비하 등 문화적 폭력의 문제

▮ EIGE가 제안한 성평등 영역과 하위 영역 ▮

영역	하위 영역	젠더 이슈
일 (Work)	참여	참여의 성별격차
	분리	노동시장 내 수평적, 수직적 분리
	일자리의 질	경력 및 고용안정, 숙련, 산업재해 등
소득 (Money)	재정적 자원	여성과 남성의 소득, 공적 이전, 자산의 격차
	경제적 상황	여성의 높은 빈곤 위험
지식 (Knowledge)	교육성취	고등 교육기회의 성별 격차
	분리	전공의 성별 분리
	평생교육	공식교육 밖의 기술과 능력 발전에서의 성별 격차
시간 (Time)	경제활동	생애과정에서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시간
	돌봄활동	여성의 높은 돌봄 시간, 남성의 낮은 돌봄 시간
	사회활동	여성 사회활동, 여가의 질의 낮은 수준
권력 (Power)	정치권력	정치와 공적 삶에서의 동등한 참여
	사회권력	과학, 기술, 학문, 미디어, 종교 등에서 여성의 낮은 영향력
	경제권력	기업과 경제 영역에서의 낮은 영향력
건강 (Health)	지위	여성의 높은 기대수명, 짧은 건강 수명
	행동	남성의 위험한 행동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
	접근	건강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교차적 불평등 (Intersecting Inequalities)	연령, 시민권, 장애, 결혼지위, 종교, 성적지향	복합적 불평등
폭력 (Violence)	직접폭력	여성에게 대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간접폭력	태도나 고정관념, 성별화된 문화적 규범과 태도에 의한 폭력

(출처 : EIGE(2012) p.18-33을 요약정리함)

다. 국내에서 성평등 영역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양성평등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은 성평등을 위한 정책영역을 문화와 의식, 일·가정 양립, 고용, 의사결정, 폭력, 건강·복지 등 크게 6개로 구분하고 있다.

① 양성평등 문화 확산, ② 일·가정 양립 확산, ③ 고용 격차 해소, ④ 공공·국제 분야 여성참여 확대, ⑤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⑥ 건강과 복지증진

▶ 성평등지수

국가와 지역의 성평등 수준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성평등 지수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등 3개 영역, 8개 분야로 구분된다.

영역	분야	국가 성평등 지수의 구성 지표	지역 성평등 지수의 구성 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 활동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의사 결정	국회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교육·직업 훈련	여성 평균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비율	여성 평균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비빈곤가구주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장애인 고용률	기초생활보장자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안전	전반적인 사회안전 인식 비율 강력범죄(흉악범)피해자 비율	전반적 사회안전 인식 비율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영역	분야	국가 성평등 지수의 구성 지표	지역 성평등 지수의 구성 지표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문화· 정보	여가시간 여가시간 만족도 성별정보화격차	여가시간 여가시간 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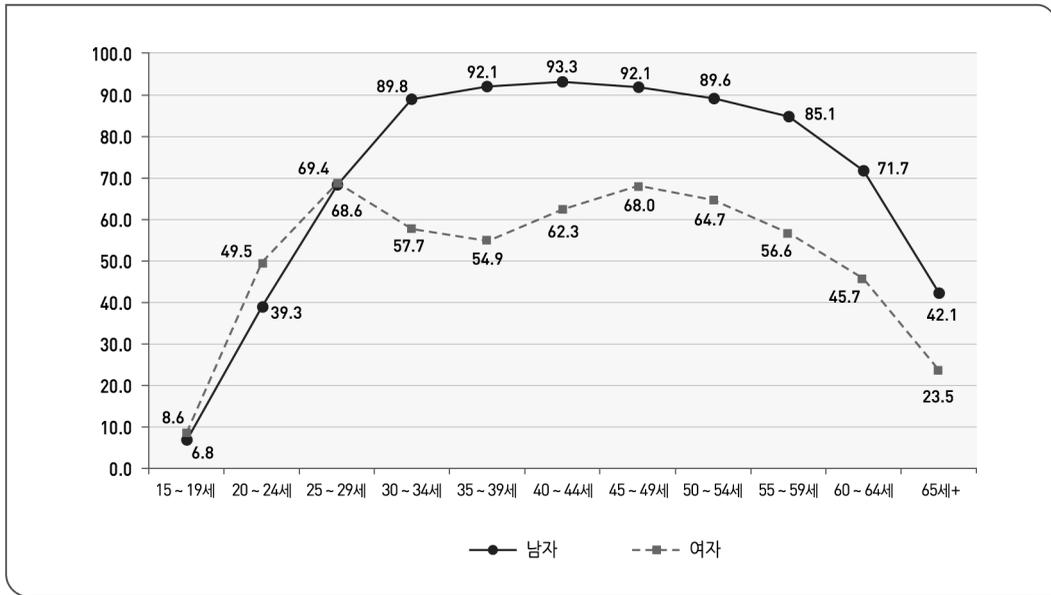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2014, 「2014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p.6)

한국에서 성평등 정책 영역의 구분은 EU의 포괄적인 성평등 영역 구분과 대체로 유사하지만(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건강, 폭력) 성평등 문화와 의식(양성평등 정책기본계획), 문화·정보(성평등 지수)가 독자적인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EU의 경우 성별 뿐 아니라 연령, 시민권, 장애, 결혼지위, 종교, 성적 지향에 따른 교차적 불평등의 문제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다양한 불평등이 중첩된 효과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가. 경제활동

▶ 연령대별 고용률의 성별격차

| 2014년 성별 연령대별 고용률(%) |



[출처 :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년 남성의 고용률은 71.4%인데 비해 여성의 고용률은 49.5%에 불과하다. 연령의 증가에 따라 역U자형으로 나타나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M자형 고용패턴을 가진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30대의 경력단절과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의 어려움, 고용에서의 성차별, 유리천장 효과, 여성의 일차적 역할은 가정 내 역할이라는 성별고정관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여성의 M자형 고용패턴은 생애소득과 경제력 측면에서의 성불평등, 그리고 노인 여성 빈곤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 성별 직종·직급분리

노동시장에서 성별에 따른 수평적, 수직적 분리(직종·업종별 분리, 직급별 분리)는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지위 차이의 원인이 된다. 대인 서비스, 돌봄 등 전통적인 여성 집중 직종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전통적인 남성 집중 직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기업을 비롯하여 경제 영역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참여의 장벽이 되는 ‘유리천장’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민간기업과 전체 공기업 관리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현재 11.4%에 불과하다(여성가족부, 2014, 「2014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p.45).

▶ 고등교육에서 성별 전공분리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분리는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전공에서의 성별분리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2014년 기준 대학생의 전공분포를 보면, 여학생은 교육계에서 57.7%, 예체능계에서 61.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남학생은 공학계에서 83.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2014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p.193). 청소년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성별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개인의 적성과 능력, 관심사에 따라 전공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성별 임금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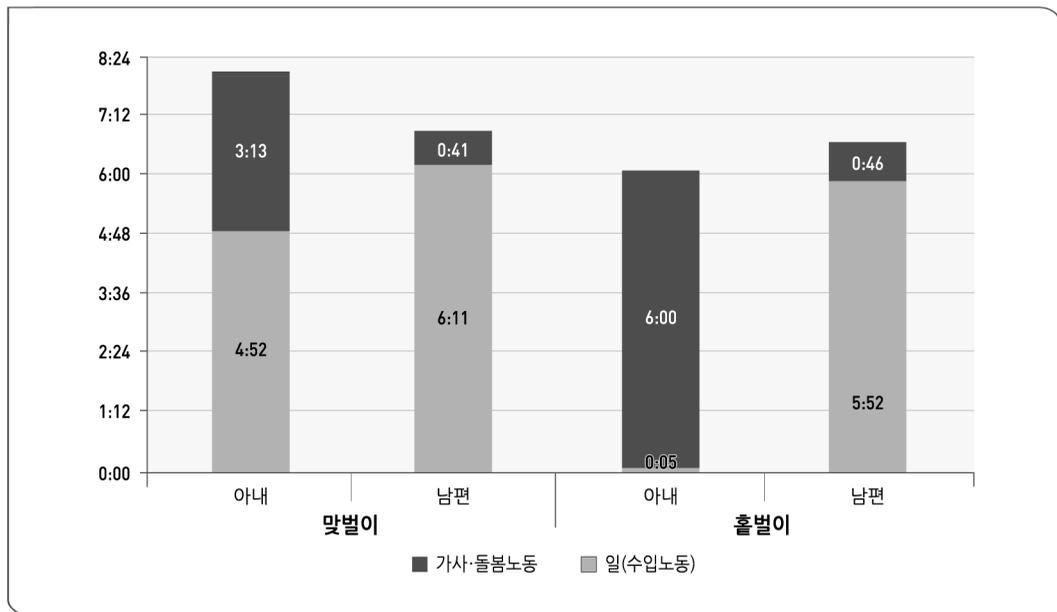
2014년 현재 여성근로자의 월평균 (정액)임금은 1,656천원으로 남성근로자 임금 2,564천원의 64.6%에 불과하다(고용노동부, 2014, 「2014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p.52). 성별 임금격차는 노동시장에서의 수직적·수평적 분리와 여성 집중 직종의 저임금,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성별 임금 격차는 그 자체가 성별을 축으로 한 사회불평등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므로 국가의 많은 정책들이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중요한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다면, 성평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나. 복지

▶ 남성의 낮은 가사·돌봄 참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남성의 가사·돌봄 참여는 이와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고 있다. 맞벌이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은 3시간 13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41분으로 홑벌이 남편 46분 보다도 적으며, 아내가 남편보다 4.7배 더 많이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통계청, 2015,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도자료」, p.32).

■ 맞벌이 부부와 홑벌이 부부의 일과 가사·돌봄노동 시간(단위 : 시간) ■



(출처 : 통계청, 2015,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

여성의 가사·돌봄 부담은 일과 직장생활 양립의 부담을 증가시키며, 고학력 여성의 만혼, 비혼, 출산회피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인구학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여성의 일·가정양립 부담은 일차적으로는 가족 내 돌봄 책임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어려운 영역은 가족 내에서 남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 취약계층 여성의 주변화

연령, 장애, 노동시장 내 지위, 출신국적, 결혼지위 등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은 성별 이외의 특성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로 더욱더 주변화 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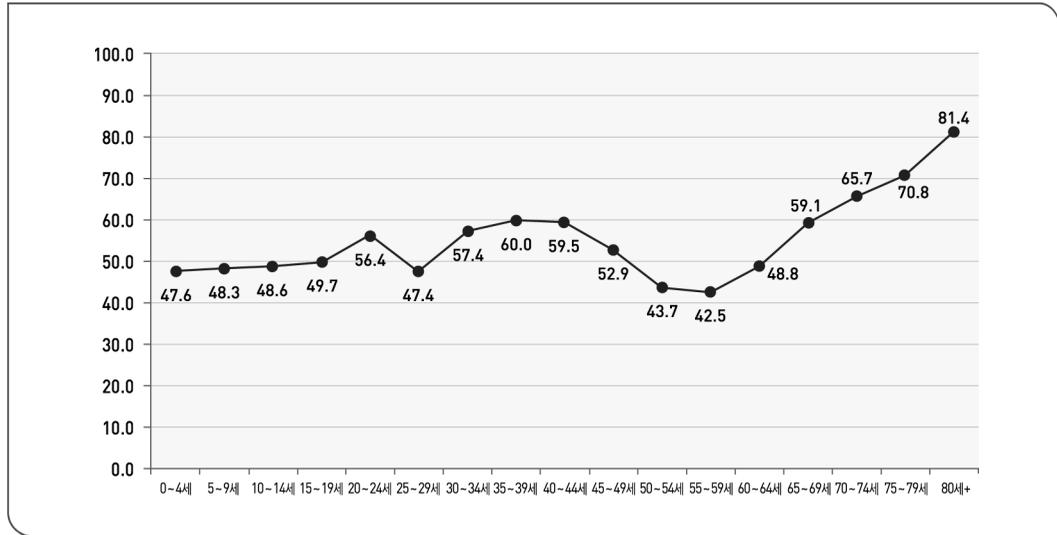
노인여성, 장애여성, 비정규직 여성, 결혼이주여성, 불법체류 여성, 미혼모, 한부모 여성 등은 사회·경제·정치적으로 더욱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20.9%로 남성장애인 46.9%의 절반도 되지 않으며(여성가족부, 2014, 「2014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p.51), 여성가구주의 절대 빈곤율은 17.5%로 남성가구주(6.2%)의 약 3배에 달한다(여성가족부, 2014, 「2014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p.51). 따라서 노인,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자, 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은 각 집단 내에서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 성별화된 사회보장제도 수급권

여성은 노동시장 참여에 기초하여 수급권이 주어지는 사회보험 가입자 중 낮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세월에 기반하여 빈곤층에게 주어지는 급여의 수급자 중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여성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40.7%(2014 한국의 성인지 통계, p.76),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39.5%(「2014 한국의 성인지 통계」, p.394)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여성은 56.1%를 차지한다(통계청 KOSIS 연령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중 여성의 비중이 특히 높은 연령대는 30대와 40대 초·중반, 그리고 70대 이후이다. 이는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기의 여성, 그리고 고령 여성이 특히 빈곤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여성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책은 남성의 수를 늘려서 양적인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하기 보다는 여성의 탈빈곤을 위한 사업의 개선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다.

Ⅰ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 Ⅰ



(출처 : 통계청, KOSIS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다. 의사결정

▶ 여성의 낮은 대표성

한국은 정치, 행정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특히 낮다. 19대(2012년) 국회의원 당선자 중 여성은 1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제헌국회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이지만,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대표하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6차 시·도 지방의회 의원 중 여성은 14.3%, 구·시·군 중 여성은 25.3%이다.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13년도 중앙정부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은 14.1%에 불과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보다 더 열악해서 10.7%에 불과하다(「2014 한국의 성인지 통계」, p.426).

이처럼 정치, 행정 영역에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여성의 비중이 낮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정책홍보, 정책이나 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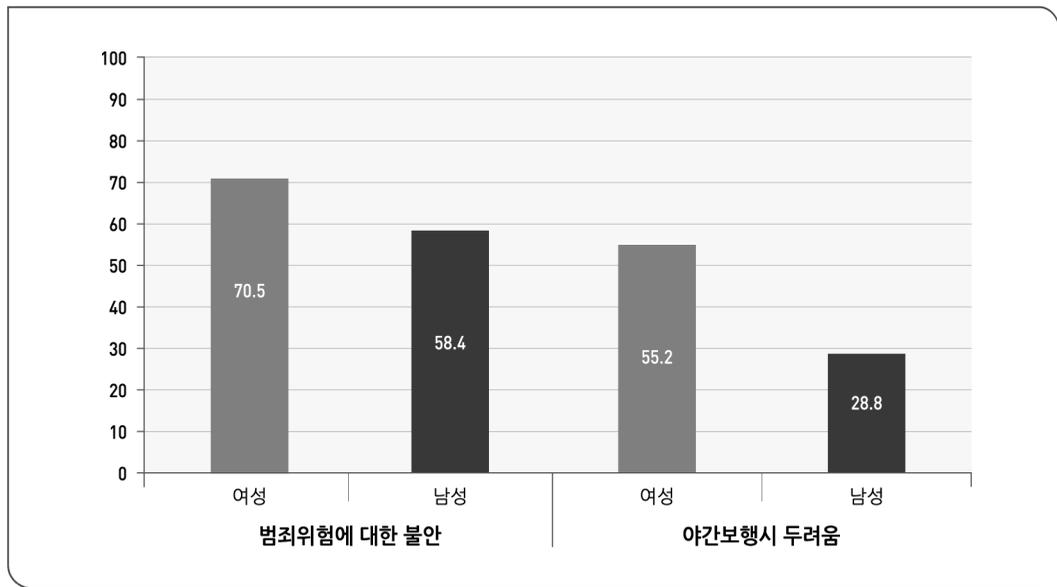
여성이 정책 대상이라기 보다 정책 형성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제도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라. 안전·재난

▶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보호

일상생활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더 많이 가지는 경향이 있다. 2014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여성 중 70.5%(남성 중 58.4%)가 범죄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 중 55.2%(남성 중 28.8%)는 야간 보행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KOSIS,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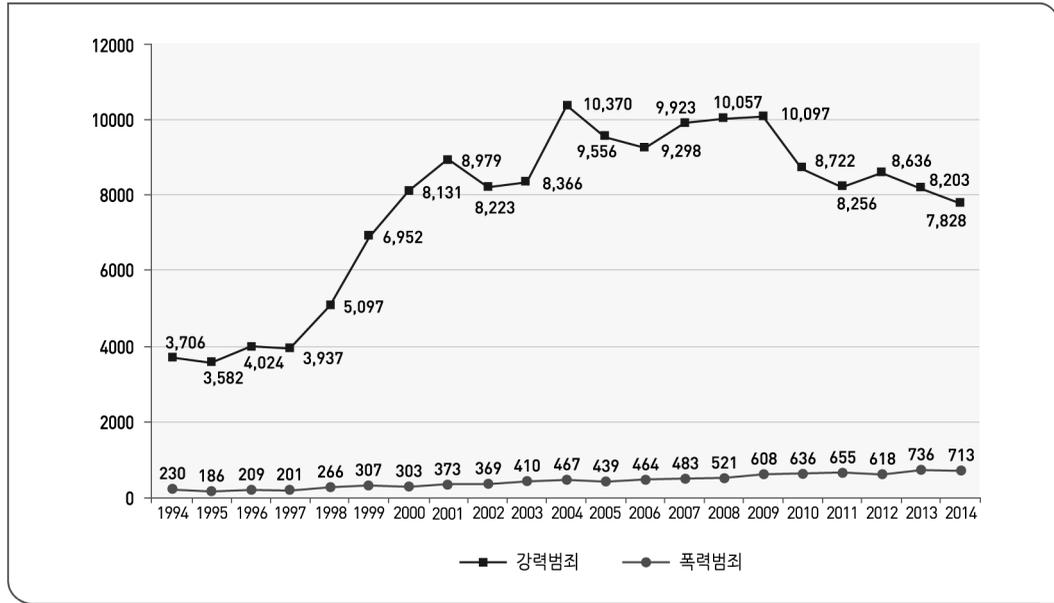
Ⅰ 성별 안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Ⅰ



(출처 : 통계청 KOSIS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실제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2013년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이 88%를 차지하며, 피해의 92.6%가 강간이다(여성가족부, 2014, 「2014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p.56). 1990년대 후반 이후 애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 크게 증가해 왔다. 1990년대 중반 약 4,000건이던 애인에 대한 폭력범죄는 2004년 10,000건을 넘어선 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3년 현재 약 8,000건에 이르고 있다. 살인·강간을 포함하는 강력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현재 713건에 이른다(통계청 KOSIS 경찰청범죄통계).

ㅣ 데이트 폭력의 추이(%) ㅣ



(출처 : 통계청 KOSIS 경찰청범죄통계)

범죄노출도와 희생자의 성별특성, 성과 관련된 범죄피해자의 여성화는 안전 영역에서의 성별특성을 반영한 정책실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폭력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은 남성에게 대한 여성의 물리적, 사회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여성의 낮은 재난 대응 능력과 높은 피해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재난에 대응 능력을 갖출 기회와 자원이 적다. 군대나 직장에서 재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는 남성에게 비해 여성은 중·고등학교 단계 이후 재난 관련 교육에 노출될 기회가 적다. 결과적으로 자연재해나 안전사고 발생시 이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재난으로 인한 사망률이 남성보다 높다. Neumayer와 Plümper는 1981년~2002년 사이 141개국에서 발생한 재난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이 재난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 성별 기대여명의 차이를 줄일만큼의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김동식 외, 2014).

마. 문화

▶ 성평등 의식의 성별격차

여성의 성평등 의식이 남성에 비해 빠르게 향상되면서 성평등 의식에서 성별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여성정책 수요조사」에 따르면 여성 중 48.5%는 여성이 남성보다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데 비해 남성은 34.4%에 불과했다. 또한 여성의 83.2%가 성차별은 심각한 문제라는데 동의하고 있지만, 남성 중에는 67.8%로 낮게 나타났다(김태홍 외, 2012 : 42-43). 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성별격차는 때로는 여성과 남성의 대립과 대결적 관계로 표출되기도 한다.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과도한 여성혐오는 여성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정서적, 문화적 폭력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 남성의 성평등 의식을 증진시키고 온라인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문화 행사 등에서 여성의 보조적 역할과 성별화된 참여

지역축제나 지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수는 많으나 여성들은 대부분 행사를 지원하거나 보조적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즉, 외형적으로 볼 때 지역 행사 등에 여성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행사를 기획하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여성비율은 낮으며 여성들의 참여방식은 대체로 ‘여성적 역할’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 기획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강조하고, 행사 참여 과정에서 성역할 분리를 완화하며 행사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고려하는 등, 문화 행사 등 사업 수행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 주변화된 여성문화예술인과 여성문화

출산 및 양육 등으로 인한 여성문화 예술인의 경력단절은 문화예술 전문인력으로서의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문화분야에 진입하는 여성은 많지만 대부분 중도 포기 혹은 탈락하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며 문화 영역의 의사 결정과정에 진입하기 어렵게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 영역에서 여성이 주변화된 결과, 역사나 문화 생산과정에서 여성들의 경험이나 지식은

보조적인 것으로 다루어 지거나 쉽게 배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문화 예술인들이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고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과 의사결정과정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여성문화나 여성역사 등을 보전 하고 이어갈 수 있는 특별한 지원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성평등에 대한 이론적 차원의 접근과 한국적 상황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에서 활용할 5개의 성평등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① 성별분업·분리 완화
- ② 여성 역량 강화
- ③ 성별고정관념 해소
- ④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 ⑤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모든 정책 평가는 정책의 성공적 시행을 통해 성취하도록 기대되는 목표를 준거로 한다.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 하였는지가 중요한 정책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역시 정책평가의 일종이다. 일반적인 정책 평가와 다른 점은 성평등을 고유의 목표로 하지 않는 정책을 성평등의 관점에서 평가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를 위해서는 분석대상 정책이 지향하는 고유의 목표 이외의 성평등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모든 정부부처와 사업담당자들이 고유 목표에 성평등 목표를 통합하여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컨설턴트들은 다음과 같은 성평등 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컨설팅을 수행한다.

가. 성별분업·분리 완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책임의 경계를 완화하는 것이다.

젠더문제

- ▶ 성별분업과 분리는 능력과 적성에 맞는 역할분담이므로 효율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여성적인 일”에 대한 사회의 가치평가는

낮으므로 위계적인 분리로 귀결되고, 이는 소득과 사회적 지위 격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 가장 기본적인 성별분업은 “여성의 일차적 책임 = 가사와 양육, 남성의 일차적 책임 = 경제적 부양”이라는 역할 구분이며, 이는 학교교육에서의 전공분리, 직업선택에서의 직종·업종 분리, 동일한 직장 내에서의 직무배치 등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확대되었으나, 남성의 가사·양육·돌봄 참여가 저조한 것이 현실이므로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
- ▶ 여성의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고등교육의 성별격차는 크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공, 직업 선택 등 교육과 일자리에서 여성과 남성의 영역은 분리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 동일한 직장 내에서도 여성은 대민·서비스 업무를, 남성은 기획과 의사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근거) 기본법의 양성평등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

나. 여성 역량 강화

임금, 소득수준, 사회보장제도 등에서 남성보다 현저히 취약한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는 것이다.

젠더문제

- ▶ 세계의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 여성은 특히 정치, 경제적 자원의 측면에서 취약하다. 이는 이 분야로의 여성 진입 장벽이 견고하기 때문이다. 남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영역은 공식적으로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규범과 문화에 의해 여성이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의 직무배치나 승진은 객관적인 자격조건 뿐 아니라 비공식적 술자리 등 사적 인맥과 네트워크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그 결과 ‘유리천장효과 (glass ceiling effect)’가 나타나게 된다.

- ▶ 노동시장이나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거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영역으로 집중되면서 ‘여성의 영역’이 형성된다. 경력단절로 인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좋은 직업 영역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중·고령 여성들이 ‘사회서비스 일자리’나 빈곤층 대상 공공근로 사업 수혜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근거) 기본법의 양성평등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는 것”

다. 성별고정관념 해소

‘남성성’, ‘여성성’, ‘남성적인 것’, ‘여성적인 것’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고정관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차별 의식을 해소하는 것이다.

젠더문제

- ▶ 성별고정관념은 개인의 적성이나 자질, 능력보다는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별에 기대되는 기질과 성향을 강요함으로써 개인의 삶을 제약한다.
- ▶ 성별고정관념은 여성에 대한 비하, 차별과 전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는 화폐가치를 가지는 경제활동보다 낮게 인정되고 있다.
- ▶ ‘남성적으로’ 행동하는 여성보다 ‘여성적으로’ 행동하는 남성은 ‘남자답지 못함’으로 인한 낙인과 배제에 더 취약하다.

(근거) 기본법의 양성평등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는 것”

라.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정치, 공공행정, 법률, 외교·국방 등 시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젠더문제

- ▶ 전통적으로 국회, 행정부, 법원, 경찰, 군대 등의 영역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남성의 역할로 간주되어 왔다. 공천할당제,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계획 등의 제도 시행에 따라 과거에 비해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장벽은 경제활동 영역 만큼 견고하게 남아 있다.
- ▶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는 ‘여성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근거) 기본법의 양성평등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

마.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행사되는 물리적, 성적, 정서적,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젠더문제

- ▶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폭력에 취약하며, 일상생활에서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
- ▶ 성과 관련된 폭력은 권력관계에 기반하여 발생하므로 지위, 자원, 힘 등에서 불안정하고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이 대부분 피해자가 된다.
- ▶ 대면적인 관계에서 뿐 아니라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혐오문화’는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근거) 기본법의 양성평등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는 것”

5 정책영역별 성평등 목표

영역*	목표	성별 분업·분리 완화	여성 역량 강화	성별 고정관념 해소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I. 교육 (교육, 산업·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직종·업종 분리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여성 일자리의 질적 수준 개선 및 가치제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직업·역할에 대한 성별고정관념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유리천장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희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 	
II. 농림수산 (농림, 해양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 이중부담 완화 및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농어업인의 직업 지위 인정 여성 농어업인의 경영 역량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 중심의 농림·해양·수산의 이미지 및 표준화된 성별고정관념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농어업인의 정책 결정과정 및 생산자 조직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지역의 가부장성으로 인한 가정폭력 근절 	
III. 복지 (사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의 돌봄 책임 강화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 빈곤 완화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돌봄 서비스 	
IV. 지역개발·안전 (지역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V. 문화·정보 (문화체육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 문화스포츠 지도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 문화스포츠 지도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론, 미디어, 광고 등에서 성별고정관념 해소 여성문화 발굴 및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SNS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문화예술 종사자에 대한 폭력 예방 및 근절 	
VI. 의사결정 (공공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 내 부서배치에서 성별분리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공무원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결정자의 성평등 의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 행정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근절 	

* 정부기능분류체계(BRM) 17개 영역 중 성평등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8개 영역(교육, 산업·중소기업, 농림, 해양수산, 사회복지, 공공행정, 문화체육관광, 지역개발)을 유사한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함.



Ⅱ. 정책·사업의 성별특성에 따른 젠더분석틀



- 1. 남성(수혜자) 집중 사업
- 2. 여성(수혜자) 집중 사업
- 3. 외형상 성중립적인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사업 수혜자의 성별 분포의 확인에서 출발하지만, 사업 수혜자 분포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남성 수혜자가 많은 사업에서는 여성의 비율을 확대하고, 여성 수혜자가 많은 사업에서는 남성의 비율을 확대하는 방식의 “산술적·기계적 성평등” 개념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성평등은 이처럼 여성과 남성의 양적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축소될 수 없다. 특정 사업에서 남성 또는 여성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사업) 수혜자의 성별 분포에 따라 “남성 집중 사업”, “여성 집중 사업”, “외형상 성중립적인 사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각 유형별로 사업 수혜자의 성별 분포가 불균등하게 나타나는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안하는 젠더분석틀을 정부의 모든 정책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전형적’으로 남성 또는 여성이 집중되는 사업이나, 가구 또는 단체 등 수혜자의 성별을 특정화하기 어려운 사업에서 젠더 문제를 찾아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 정책·사업의 성별특성에 따른 젠더분석틀

1 남성(수혜자) 집중 사업

- <사업예시> 농촌지도자회 육성, 산림가꾸기 사업,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판매지원
- 사업 특성
 - ▶ 이 유형의 사업은 성별 분업이나 성역할 고정관념 등에 의해, 혹은 누적된 성차별의 결과로서 사업 대상 모집단 자체가 남성이 다수이거나 해당 사업이 남성 영역으로 간주되어서 수혜자 중 남성이 많은 사업이다.
 - ▶ 모집단 자체에서 여성 비중이 낮거나 사업 대상자가 되기 위해 여성이 갖추기 어려운 기준이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 ▶ 이 유형에는 고용, 농림어업 등 경제 분야의 사업, 이미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들이 많다.
- 원인진단 및 개선방향

원인진단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전통적’ 분야로서 모집단에서 남성의 비중이 높음 ▶ 제도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 수급 또는 사업 참여에 요구되는 자격 기준이 까다롭거나 높음 -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숙련, 전문성이 필요함 - 이러한 진입조건은 주변화된 여성의 참여·진출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함 ▶ 성역할 고정관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직종, 업종은 ‘남성적 영역’이라고 가정됨 - 사업추진 방식 전반에서 남성의 경험과 삶의 방식이 표준이 됨 ▶ 성별화된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들 스스로도 ‘여성에게 맞지 않는 일’, ‘할 수 없는 일’로 간주하고 참여·진출을 꺼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참여를 확대하여 모집단에서 여성의 비중을 증가시킴으로써 평등을 성취하고자 함 ▶ 균등기회·균등처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을 배제하는 명시적·암묵적 기준의 제거 ▶ 차이·차별적 조건의 인정에 기반한 적극적 조치 (Affirmative A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양적 목표치를 설정 -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캠페인, 교육, 역할 모델 제시 등 ▶ 성별화된 기준과 제도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 또는 참여 의사가 있는 여성들을 제한하는 기준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발 기준, 사업운영 방식 등 기준을 변화시킴 - 돌봄 책임이 있는 참여자를 전제로 한 사업 추진

- <사업예시> 가사간병 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전통적인’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된 역할과 관련된 사업.
- 사업특성
 - ▶ 여성 집중 사업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영역으로 진출하지 못한 결과 주변화 된 영역인 경우가 많음.
 - ▶ 남성 집중 일자리와 달리 보수가 낮고, 단기적 일자리로서 근로조건이 열악하거나, 돌봄이나 서비스와 관련되는 등 ‘여성적 일자리’라는 고정관념에 의해 남성들이 참여를 꺼려함. 이 일자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남성 집중 일자리의 남성들과 달리 별다른 대안 또는 선택지를 갖지 못함.
 - ▶ 복지 사업의 경우, 여성들의 낮은 경제활동참여와 빈곤 등으로 여성들이 서비스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많음. 그 결과 사업 대상의 모집단 자체에서 여성이 많음. 즉, 사업 대상자와 참여자 모두 여성인 경우가 많음.
- 원인진단 및 개선방향

원인진단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단에서 여성 비중이 높음. 노인, 저소득층, 한부모 등 ▶ 제도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 수급, 사업 참여를 위한 특별한 자격 조건이 요구되지 않아 여성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음. - 숙련도가 낮고 단순한 일로 평가절하되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처럼 중장년 여성을 특별히 타겟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 성역할 고정관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직종, 업종은 ‘여성적 영역’이라고 가정됨 ▶ 성별화된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자체가 ‘여성적 일’로 평가절하 되어 남성이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남성들이 기피하는 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지위 향상을 통해 평등을 성취하고자 함 ▶ 성별화된 기준과 제도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유형의 사업·정책의 성별화된 기준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성적 영역’의 가치를 재평가 하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일자리에 대해 책정된 임금 수준의 적절성을 재평가함 ▶ 차이·차별에 의해 불리한 상황에 놓인 여성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다르게 놓여 있는 조건을 고려하여, 사업이나 급여, 일자리의 양적,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 여성들이 집중된 사업은 1인당 예산을 비롯한 사업규모가 적은 경향이 있으므로 예산 확대를 고려해야 함

- <사업예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노인일자리 지원, 발농업직불제, 취약계층 주거 지원
- 사업특성
 - ▶ ‘전통적’ 영역분리와 달리 청소년·청년 등 상대적으로 성별고정관념이 완화된 세대나 성역할 분리가 약한 노년층 대상 사업, 지원 단위가 가구, 단체, 기관 등이어서 사업 수혜자의 특성을 ‘남성적’ 또는 ‘여성적’으로 뚜렷이 구분하기 어려운 사업이 많음.
 - ▶ 행사나 단체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의 참여자 중 여성이 대부분이거나 단체의 성별이 없어서 여성수혜자가 많거나 성불평등 문제가 없는 사업으로 인식 되기 쉬움.
 - ▶ 사업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 분석, 사업 편익의 실질적 귀착(예를 들어 가구 단위 지원 사업의 경우 실제 가구 내에서 편익이 귀착되는 방식),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성별에 따른 역할 구분(행사에서 남성은 기획, 여성은 참여 대상으로 구분)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사업 결과의 성별 분리 또는 성별 위계가 드러남.
- 프로그램별 성별분리 사업

원인진단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노인 등 특정 인구 또는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모집단은 대체로 균형을 이루나, 사업의 수혜자 선정 기준이나 프로그램 내용 등에 따라 수혜자의 성별 비중이 유동적으로 나타남 ▶ 청소년·청년 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분리가 청소년·청년에게서 나타날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 의식에 기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청년 등 공식적 사업 대상자들이 성별 고정관념에 의해 프로그램별로 분리되지 않고, 개인의 적성과 관심, 능력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대상 사업은 프로그램별 참여자의 성별 균형을 위한 적극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별로 한 성이 30% 미만인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 조치를 마련 (예) 발레 프로그램 참여하는 남학생, 농구 프로

원인진단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여성적 영역'에서 남성 참여를 회피하게 되는 경향 (예) 청소년 수련관 발레 프로그램에 남학생의 낮은 참여 ▶ 노년층 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년층의 경우는 과거 생애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의 결과로서 성별분리가 나타나는 경향.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남성 노인은 교육수준이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공익형 일자리 참여가 높은 반면, 여성 노인은 단순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공공형 일자리 참여가 높은 경향 	<p style="text-align: center;">그램 참여하는 여학생 수강료 할인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년층 대상 사업의 경우 노인 여성의 빈곤, 건강, 여가 관련된 정책 욕구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검토 - 생애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성별분업을 해소하기 보다는 성별분업과 차별의 결과로 발생한 여성 노인의 빈곤 등의 문제 해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가구 또는 단체 지원 사업

원인진단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또는 단체 내에서 자원 배분의 권한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또는 단체는 성별을 특정할 수 없어서 성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사업의 궁극적인 혜택은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임 - 그러나 가구 또는 단체 내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실제 사업의 혜택이 성별에 따라 균등하게 공유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유형의 사업의 경우는 단순한 수혜자 분석 이상의 분석, 즉 가구 또는 단체 내에서 자원이 분배되는 방식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또는 단체 내에서 자원 배분 규칙을 변화 시킴으로써 여성의 욕구가 적절히 잘 반영되고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자원배분 방식의 변화 가능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단위 지원을 개인단위로 전환할 수 있는지 - 단체 지원시 단체의 의사결정과정 참여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보 수준을 단체 지원의 자격 또는 기준으로 포함하는 방식 등

○ 행사성 사업

원인진단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사결정, 여성=대상”으로 나타나는 위계적 성별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성 사업의 경우 행사 참여자의 성별 분석을 하면,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사 참여자가 아니라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임 - 마을 공동체, 주민참여제도, 지역 행사 등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서는 남성은 기획이나 의사결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여성은 행사 또는 사업의 대상이 되는 위계적 성별분리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여성의 역할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성별고정관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성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에서 여성의 역할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성별고정관념에 기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지역 사회 내 의사결정직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사회 내 행사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을 정책이나 사업의 대상으로 평가절하하지 않으면서 지역 사회 내 의사결정에서 대등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위계적” 성별고정관념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에서 여성의 역할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위계적 성별고정관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 ▶ 행사성 사업의 기획 등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보 방안의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성 사업의 기획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Ⅲ. 정책·사업 영역별 컨설팅 가이드라인



1. 고용(교육, 산업·중소기업)
2. 농림수산(농림, 해양수산)
3. 복지(사회복지)
4. 지역개발·안전(지역개발)
5. 문화·정보(문화체육관광)
6. 의사결정(공공행정)



III. 정책·사업 영역별 컨설팅 가이드라인

1 고용(교육, 산업·중소기업)

▶ 1단계 : 성평등 목표의 확인

- 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 ② 여성 일자리의 질적 수준 개선 및 가치 재평가
- ③ 성별 직종·업종 분리 완화
- ④ 전공·직업·역할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해소
- ⑤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
- ⑥ 기업의 유리천장 해소

▶ 2단계 : 사업의 성별특성 확인

구분	남성집중	여성집중	외형상 성중립
사업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ICT, 에너지 인력, 해운물류, 금융전문, 맞춤형 기술인력 - 방송영상전문인력 등 문화산업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양성 및 지원 - 디지털, 에코디자인, 시간선택제 교사 ▶ 사회서비스 일자리 - 장기요양보호사, 산모도우미 등 ▶ 중고령 여성 대상 일자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 문화콘텐츠, 식품산업, 글로벌청년리더, 중등교원 연수지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 채용박람회 ▶ 청소년 대상 교육

구분	남성집중	여성집중	외형상 성종립
사업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경영·자금지원 등 - 중소기업육성, 기업환경 개선, 우수 벤처기업 육성,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소상공인 지원 - 가구전시회 참가 지원 ▷ 지역 일자리 창출 -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 개선, 저소득층 공공근로사업 ▷ 미술, 사회적 기업 육성 미술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참여형 직거래 활성화 ▷ 통계조사, CCTV모니터링 인력배치사업 * 지자체에서는 일자리로서 여성 조서원을 배치하여 낮은 급여, 계약직 고용, 한시적 채용의 조건으로 여성의 일자리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자립과 탈빈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는 방안으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진로교육, 직업진로, 학력향상 지원, 영어체험 캠프 ▷ 전통시장 활성화 ▷ 평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 체험환경 교육, 시민사회교육, 자치회관 프로그램, 교양좌담회,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의 성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교육, 산업·중소기업) 영역에서 남성 수혜자가 다수인 사업은 다음과 같고 같은 요인의 여성 진입 장벽을 기지는 경향이 있음 - 기계·장비 등 근력을 필요로 하며, 여성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가정됨 - 암묵적, 명시적으로 '남성적 일자리'라는 가정에 기반하며 이미 남성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특정 직업·일자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력 또는 자격증이 요구됨 - 임금, 근로조건 등이 양호하며 '전문적' 일로 인식되는 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교육, 산업·중소기업) 영역에서 여성 수혜자가 다수인 사업은 특별한 자격기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근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노동력 집중 분야인 경우가 많음 - 디자인, 문화, 대인 서비스 등의 일자리로 '여성적' 자질에 잘 맞는다고 가정됨 - 임금이 낮은 복지형 일자리와 관련된 경우가 많음. 임금이 낮아 남성들이 접근하지 않으려는 특성 - 암묵적, 명시적으로 '여성적 일자리'라는 가정에 기반 (예) 중고령 여성 일자리로써 사회서비스 일자리 -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남성적 영역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여성들이 접근하기 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교육, 산업·중소기업) 영역에서 외형상 성종립적으로 보이는 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직업·일자리에서의 수평적·위계적 분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 - 여성의 일차적 역할로 간주되는 가사·돌봄의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청소년, 청년,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함 - 그러나 세부사업 또는 프로그램별로 여성 또는 남성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일자리에서의 성별분리는 청소년의 경우는 '남성성' 또는 여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산물, 노인의 경우는 성별 분업에 기초한 생애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의 결과

▶ 3단계 : 원인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체크포인트

구분	남성 집중	여성 집중	외형상 성중립
원인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적 모집단에서 남성이 많은가? ▶ 해당 사업은 '남성적 영역'이라는 인식 또는 고정관념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어떤 고정관념인가? * 실제로 여성이 수행해도 되는 일임에도 관행적으로 남성을 선발하는 경우가 있음 (문화재 유지 보수 등). 인력의 선발(채용) 과정의 폐쇄성을 검토 ▶ 참여자 선발 기준에서 여성들이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이나 기준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 여성들은 이 사업 참여를 꺼려하거나 어려워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고 있는 돌봄 책임은 이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가? ▶ 이 사업의 설계 또는 집행과정에서 여성들의 요구가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적 모집단에서 여성이 많은가? ▶ 해당 사업은 '여성적 영역'이라는 인식 또는 고정관념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어떤 고정관념인가? ▶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에게 이 사업 참여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있는가? ▶ 임금이 낮아 남성이 꺼리는 경우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별 수혜자가 '남성 집중' 또는 '여성집중'으로 구분되는가? ▶ 남성 또는 여성이 성별을 이유로 특정 프로그램의 참여를 꺼려하거나 어려워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성별 고정관념에 의해 남성집중 영역과 여성집중 영역이 구분되는가? ▶ 남성집중 영역과 여성집중 영역 참여자들의 특징(연령,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남성집중 영역과 여성집중 영역에 투입된 자원(예산,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의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업의 대상자를 선발할 때 여성의 비율이 일정 수준 되도록 할당할 수 있는가? ▶ 이 사업 관련 분야에 도전하고 싶지만, 쉽게 자격을 갖추기 어려운 여성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잠재적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업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가? * 예산투여는 질적 향상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양적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임급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업의 세부프로그램인 남성집중 영역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여성들을 위해 여성비율을 할당할 수 있는가? ▶ 이 사업의 세부프로그램인 남성집중 영역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만,

구분	남성진중	여성진중	외형상 성공립
개선 방안	<p>에서 여성 비율을 확대할 수 있나?</p> <p>▶ 사업대상자 선발과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나?</p> <p>▶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할 수 있나?</p> <p>▶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p>	<p>▶ 이 사업 참여자들의 고용상 지위(일거리의 질적 수준, 임금 등)를 향상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p>	<p>자격을 갖추기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할 수 있나?</p> <p>▶ 남성진중 영역 사업대상자 선발과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나?</p> <p>▶ 남성진중 영역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할 수 있나?</p> <p>▶ 여성진중 영역 사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예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p>

▶ 1단계 : 성평등 목표의 확인

- 농림해양수산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컨설팅은 다음과 같은 성평등 목표를 준거로 함
 - ① 여성 농업인의 직업 지위 인정
 - ② 여성 농어업인의 경영역량 향상
 - ③ 남성 중심의 농림·해양·수산의 이미지 및 표준화된 성별고정관념 해소
 - ④ 여성 농어업인의 정책결정과정 및 생산자 조직 참여 확대
 - ⑤ 여성의 이중부담 완화 및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 확대
 - ⑥ 농어촌지역의 가부장성으로 인한 가정폭력 근절

▶ 2단계 : 사업의 성별특성 확인

구분	남성집중	여성집중	외형상 성중립
사업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차산업화, 농식품 산업 활성화 ▶ 농가/어업인 경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차산업 경영컨설팅, 농기계 임대, 신림바이오매스 ▶ 농업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훈련, 농업인 대학, 농업경영인 지원, 농업전문인력 육성, 선도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농업직불제, 농수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가족 방역진단, 농가도우미 지원, 농촌주거문화, 친환경 농업지원, 농업경영정보지원, 경영체지원, 농업 기술보급, 정보지원 등 ▶ 행사 및 휴양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의 날, 강씨봉휴양림, 자연체험장 건립, 농촌 테마공원 조성, 수목원 조성지원, 산림서비스 증진

구분	남성집중	여성집중	외형상 성중립
사업사례	<p>경영 지원, 농업인 교육훈련비 지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농업인교육, 어업인 교육훈련 및 지원, 농촌지도자회</p>		<p>▷ 일반인 농업 교육 - 찾아가는 아파트 도시텃밭, 도시농업 육성, 귀농 귀촌 화합 프로그램, 귀농귀촌교육 ▷ 산림자원보호, 산림자원 조성 ▷ 안전관리 수산물 안전관리, 축산물 안전관리</p>
사업의 성별 특성	<p>▷ 농림수산(농림해양수산) 영역에서 남성 농업인 집중 사업은 산업으로서 농업 활성화, 농가경영지원, 영농인력 양성, 농업 생산자 지원 등 예산 규모가 크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농촌 사회의 위계적 성별분리 하에서 암묵적, 명시적으로 남성을 지원 대상으로 가정함 - 여성 농업인이 갖추기 어려운 사업 신청·참여 자격을 요구함</p>	<p>▷ 농림수산(농림해양수산) 영역에서 여성 농업인 수혜자가 다수인 사업은 고령자 등 농어촌 취약계층 복지 사업이 대부분으로 취약한 농어촌 여성의 지위를 반영함.</p>	<p>▷ 농림수산(농림해양수산) 영역에서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가구단위로 지원하거나 농어업 생산자 조직 등 농업 생산에서 이미 남성이 대표성을 갖는 조직을 단위로 한 지원 - 행사성 사업으로 참여자의 다수가 여성이지만, 사업의 기획과 진행은 남성이 주도하는 경향이 있음 - 여성 대표성을 갖는 조직은 남성단체의 활동이나 지자체 행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됨</p>

* 지원대상이 농가(가구단위)인 경우 농가의 대표성은 대부분 남성이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 훈련, 양성, 경영지원 등의 사업수혜가 남성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예를 들어 6차산업 참여조건(농지소유 등)이 여성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임. 하지만 사업은 대부분 여성이 종사(가공, 발효, 포장 등) 하고 있고 사업수혜자인 남성에게 여성은 재고용되는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위계적 관계가 형성됨.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부프로그램의 참여자 (주로 여성)에게 실질적 지원이 되고 있는지 여부와 여성에게 농업인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기를 검토해 봐야 함

* 농업인력훈련 관련 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명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기술훈련 등 집중프로그램에는 남성에게, 단기로 실시되는 워크숍 형태의 프로그램에는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경우가 있음. 이는 농업관련 분야만이 아니라 인력양성프로그램 전반에 나타나는 것으로 사업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별 수혜분석 및 특성이 세부적으로 분석되어야 함

▶ 3단계 : 원인지단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체크포인트

구분	남성집중	여성집중	외형상 성중립
원인지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적 모집단에서 남성 동어업인이 많은가? ▶ 해당 사업은 암묵적으로 남성 동어업인이 신장·참여할 것으로 가정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사업 신장·참여자 선발 기준에서 여성 동어업인이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이나 기준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 여성 동어업인 스스로 이 사업 참여를 꺼려 하거나 어려워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이 사업의 설계 또는 진행과정에서 여성 동어업인들의 요구가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적 모집단에서 여성 동어업인이 많은가? ▶ 이 사업의 규모와 범위는 농촌 고려 여성, 임산·출산·육아기에 있는 동어업인 여성 수혜자의 취약한 지위를 개선 하기에 충분한가? ▶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이 사업 수혜 이외의 다양한 대안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단위 지원 사업의 공극적 편익은 가구 내 누구에게 귀착되는가? ▶ 동어업인 단체 지원 사업 추진에서 남성 동어업인과 여성 동어업인의 역할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역할의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가? ▶ 동어업인 관련 행사에서 남성 동어업인과 여성 동어업인의 역할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역할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가?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업의 대상자를 선발할 때 여성 동어업인의 비율이 일정 수준 되도록 할당할 수 있는가? ▶ 여성 동어업인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기준을 개선할 수 있는가? ▶ 이 사업 관련 분야에 도전하고 싶지만, 쉽게 자격을 갖추기 어려운 여성 동어업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잠재적 모집단에서 여성 동어업인의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가? ▶ 사업대상자 선발과정에서 여성 동어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동어업인의 취약한 지위 개선을 위해 이 사업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가? ▶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여성 동어업인의 사업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개선할 여지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를 단위로 한 지원 방식을 개인 단위로 변경하고, 여성 동어업인과 남성 동어업인의 수혜가 고르게 지원할 수 있는가? ▶ 동어업인 단체 지원 사업의 지원 자격 또는 지원 기준에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를 포함할 수 있는가? ▶ 동어업인 행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 사업 행사 추진시 홍보물은 암묵적으로

구분	남성집중	여성집중	외형상 성중립
개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농어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할 수 있나? ▶ 여성 농어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가사·보육·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가? ▶ 여성 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가? 		농어촌의 수평적, 수직적 성별분리에 대한 가정을 전제하지 않는가?

3 복지(사회복지)

▶ 1단계 : 성평등 목표의 확인

- 복지 영역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은 다음과 같은 성평등 목표를 준거로 함
 - ① 여성 빈곤 완화
 - ②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
 - ③ 복지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 ④ 남성의 돌봄 책임 강화
 - ⑤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⑥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돌봄 서비스

▶ 2단계 : 사업의 성별특성 확인

구분	남성집중	여성집중	외형상 성중립
사업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 장년 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년취업인턴제, 취업활동지원 단체 지원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부모모니터링단, 부모 커뮤니티 ▶ 보육·복지 관련 인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 한부모 가족 및 노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거노인 지원, 노인복지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지원, 저소득층 조세분유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청소년방과후 지원, 노일일자리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 복지시설 설립·기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체육시설, 국공립

구분	남성집중	여성집중	외형상 성중립
사업사례	<p>▶ 복지(사회복지) 영역에서 남성 수혜자가 다수인 사업은 장애인, 노인, 중장년 취업 지원 사업이 많음</p> <p>- 이 사업들은 장애여성, 중장년·노인 여성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 보다 임금, 근로조건 등이 양호한 일자리임</p> <p>- 임무적, 명시적으로 수혜자가 남성일 것으로 지정되는 경향이 있음</p>	<p>▶ 복지(사회복지) 영역에서 여성 수혜자가 다수인 사업은 여성의 가족 내 역할의 사회적 연장이라 할 수 있는 돌봄 관련 사업이거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지위를 반영하는 사업이 대부분임</p> <p>- 각종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육성, 지원 사업이나 부모 교육 사업 등은 암묵적으로 돌봄을 '여성적 일'로 가정함</p> <p>- 대인 서비스라는 성격상 돌봄 서비스는 수혜자와 제공자가 있으므로 양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예) 장애인활동보조인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p> <p>- 한부모, 독거노인 등 지원 사업은 혼인 상태, 연령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취약해 지기 쉬운 여성의 지위를 반영함</p>	<p>어린이집 확충, 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숙인 재활요양시설</p> <p>▶ 취약·위기 청소년 지원</p> <p>-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 방과후 활동</p> <p>▶ 일반청소년 프로그램</p> <p>- 청소년 의회교실,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 청소년 동아리 지원</p> <p>▶ 단체지원</p> <p>- 노인, 장애인 단체 등</p> <p>▶ 저출산 대책</p> <p>농촌보육여건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부모코칭</p> <p>▶ 복지(사회복지) 영역에서 외형상 성중립적으로 보이는 사업은 청소년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가구 단위지원, 복지시설 설립이나 복지단체 지원 등이 있음</p> <p>- 이러한 사업에 대한 분석은 사업의 세부 프로 그램별 분석을 통한 수혜의 성별분리 현상을 파악하거나</p> <p>- 가구 단위 사업의 수혜 자격 조건이 '가구주' 등 여성이 충족시키기 어려운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p> <p>- 복지시설·기관 운영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확보 되고 있는지, 성별에 따라 역할은 어떻게 구분 되는지</p> <p>- 지원대상 단체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확보되고 있는지, 성별에 따라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등에 초점을 맞춤</p>
사업의 성별 특성			

▶ 3단계 : 원인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체크포인트

구분	남성집중	여성집중	외형상 성중립
원인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적 모집단에서 남성이 많은가? ▶ 해당 사업은 암묵적으로 수혜자를 '남성'으로 가정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참여자 선발 기준에서 여성들이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이나 기준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고 있는 돌봄 책임은 이 사업의 여성 참여를 제한하는가? ▶ 이 사업의 설계 또는 집행과정에서 여성들의 요구가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적 모집단에서 여성이 많은가? ▶ 해당 사업은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 또는 고정관념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어떤 고정관념인가? ▶ 이 사업 참여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가? ▶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에게 이 사업 참여 이외의 다양한 대안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별 수혜자가 '남성 집중' 또는 '여성집중'으로 구분되는가? ▶ 남성 또는 여성이 성별을 이유로 특정 프로그램의 참여를 꺼려하거나 어려워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성별고정관념에 의해 남성집중 영역과 여성집중 영역이 구분되는가? ▶ 남성집중 영역과 여성집중 영역 참여자들의 특징(연령,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남성집중 영역과 여성집중 영역에 투입된 자원(예산,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의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가구 단위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에서 여성이 충족시키기 어려운 기준이 있는가? ▶ 복지시설·기관, 복지단체 관련 사업의 경우, 의사결정직에서 여성의 참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여성의 참여가 낮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구분	남성집중	여성집중	외형상 성공림
<p>개선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업의 대상자를 선발할 때 여성의 비율이 일정 수준 되도록 할당할 수 있는가? ▶ 이 사업 관련 분야에 도전하고 싶지만, 쉽게 자격을 갖추기 어려운 여성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잠재적 모집단에서 여성 비율을 확대할 수 있나? ▶ 사업대상자 선발과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나? ▶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할 수 있나? ▶ 돌봄 서비스의 지원은 여성의 이 사업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업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가? ▶ 이 사업 참여자들의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위(빈곤, 건강, 사회적 편견, 차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업의 세부프로그램인 남성집중 영역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여성들을 위해 여성 비율을 할당할 수 있는가? ▶ 이 사업의 세부프로그램인 남성집중 영역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만, 자격을 갖추기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할 수 있나? ▶ 남성집중 영역 사업대상자 선발과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나? ▶ 남성집중 영역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할 수 있나? ▶ 여성집중 영역 사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복지시설·기관, 복지단체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4 지역개발·안전(지역개발)

▶ 1단계 : 성평등 목표의 확인

- 지역개발·안전 영역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은 다음과 같은 성평등 목표를 준거로 함
 - ① 지역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
 - ②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 2단계 : 사업의 성별특성 확인

- 외형상 성중립적
 - 지역개발·안전 영역의 사업은 성별을 특화할 수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속성상 외형상 성중립적인 사업임

구분	외형상 성중립
사업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개선 및 확충 : 노후시설 개선, 시설유지관리, 공공시설 확충 ▶ 도시재생 : 도시재정비, 도로정비 ▶ 공원조성 및 관리 : 공원조성, 숲길 조성, 녹지조성, 공원시설 관리, 거리조성 ▶ 주거개선 및 지원 : 주거환경 개선, 폐공간정비, 빈집 정비, 임대주택 건설, 주택바우처, 저소득층 주거지원 ▶ 도로정비 및 관리 : 도로정비, 도로조명, 가로등 설치, 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정비, 거리시설보수, 거리조성, 하수시설 관리 ▶ 주차장 확충 및 관리 : 공영주차장 확충, 주차장 건립 ▶ 공공화장실 : 공공화장실 조성 및 개선, 이동식 화장실 개선
사업의 성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사업은 대부분 시설설치 사업이 많고, 주민 및 일반 시민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주를 이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퇴근이 중심이 되는 남성들의 이용패턴을 전체로 공간이 구성되는 경향이 있음. 성별수혜에서 성별분리가 나타나기 보다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의 참여가 중요함. - 실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가 큼

▶ 3단계 : 원인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체크포인트

구분	외형상 성중립
원인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기획, 집행, 평가 과정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가? ▶ 해당 사업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특별한 요구가 있는가? (예) 공원조성사업에서 공중화장실 변기설치시 남녀요구 차이 반영 ▶ 사업진행과정에서 지역 안전 및 폭력 예방을 위한 별도의 노력과 조치를 취하였는가? ▶ 자주근접한 생활공간의 형성을 지원하는가? 용도지역을 구분하여 이분법적으로 일터와 주거공간을 분리한 공간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은가? ▶ 여성과 남성이 함께 돌봄에 참여가능한 공간구조를 지원하고 있는가? ▶ 생활권 내 일상생활 필요시설을 배치하고 있는가? ▶ 남녀의 일상생활의 패턴을 고려하고 있는가?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 여성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위탁사업의 경우, 사업기관 선정 시 조건이나 기준에 여성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가? ▶ 사업을 통해 지역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안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평가기준과 여성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기준 등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가? ▶ 공공공간/공공시설 내 돌봄지원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가? (수유실, 남녀 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임시돌봄시설 등) ▶ 돌봄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출퇴근 패턴(시간, 거리 등), 비경제활동 여성 인구의 공간 이용 패턴, 보행과 대중교통 이동 비율이 높고, 생활권 내 공간 이용이 높은 여성들의 공간이용을 고려하고 있는가? ▶ 이동, 고령자, 장애인 및 돌봄대상 동반자(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음)의 이용을 고려하여 공공공간/공공시설의 접근성, 편의성, 물리적 안전성 등을 고려하고 있는가? ▶ 지역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가? ▶ 지역개발과정에서 지역공동화에 따른 우범지역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는가?

▶ 1단계 : 성평등 목표의 확인

- 문화·정보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권설템은 다음과 같은 성평등 목표를 준거로 함
 - ① 여성의 문화스포츠허 지도 역량 강화
 - ② 언론, 미디어, 광고 등에서 성별고정관념 해소
 - ③ 여성문화 발굴 및 보존
 - ④ 문화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
 - ⑤ 온라인, SNS 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 ⑥ 문화예술종사자에 대한 폭력 예방 및 근절

▶ 2단계 : 사업의 성별특성 확인

구분	남성진중	여성진중	외형상 성중립
사업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인물 조명 - 건축문화제 ▶ 문화체육관련 지도자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 문화예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 극단 등 직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극장 전속단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가족체육대회, 국제보트쇼 ▶ 어린이,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승마교실, 아간 인문학, 생활체육 교실 ▶ 문화 시설 및 공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우수 전통민속 보존, 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 문화산업 활성화 : 문화산업 개발

구분	남성집중	여성집중	외형상 성중립
사업의 성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이 다수인 사업은 특정한 문화나 체육 분야에서 남성중심이거나 남성으로 대표되는 경우가 많음 - 문화나 체육, 정보 분야에서 성별분리에 따라 오랫동안 남성들만의 영역으로 이루어짐 - 문화체육관련 의사결정과정이나 대표자가 대부분 남성 - 문화체육분야의 저임금, 고용불안정 등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단절이 빈번하게 일어남 - 이로 인해 장기경험을 요구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어려움 - 문화체육분야의 성별화된 도체식 훈련 방식은 여성의 동등한 기회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정보(문화체육관광) 영역에서 여성 수혜자가 다수인 사업은 시민대상 사업 이거나 여성들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문화 체육 영역임 - 이러한 영역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고 해당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낮은 경향 - 문화체육종사자의 고용 불안정 및 경력 단절 문화체육분야에서의 여성의 낮은 대표성 - 여성의 돌봄노동 책임으로 인해 자녀관련 문화프로그램의 경우, 여성들은 보조 참여자로 참여하는 경향 - 시민대상 문화체육 관련 프로그램은 단순히 문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정보(문화체육관광) 영역에서 외형상 성중립적으로 보이는 사업은 일반 시민 대상문화 행사 사업이나 지역문화 보존 등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이 있음 - 행사의 경우, 행사진행 참여자는 대부분 여성들이 많으나 의사결정과정의 참여는 낮은 경향. 행사시 참여자는 자녀동반 여성이나 가족단위 방문이 많을 수 있음 - 문화사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 외형상 성중립적으로 보이나 기존에 여성들이 해왔던 역할이나 문화에 대한 지원은 부족 - 외형상 성중립적으로 보이나 문화체육이 도제식으로 이루어지고, 고용조건이 열악하여 영역 내 폭력의 가능성 존재 - 최근 온라인, SNS 등 보이지 않는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여성혐오 문화 확산

▶ 3단계 : 워킹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체크포인트

구분	남성진중	여성진중	외형상 성중립
<p>원인 진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혜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모집단에 남성이 더 많은가? ▶ 영역별로 ‘남성적 영역’이라는 인식 또는 고정관념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어떤 어떤 개념인가? ▶ 여성들이 종사하거나 참여하기 어려운 자격 조건이나 일자리 조건은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은 ‘여성적 영역’이라는 인식 또는 고정관념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어떤 어떤 고정관념인가? ▶ 여성의 참여가 많은 만큼 의사결정과정에 대해서도 여성 참여가 동등하게 이루어 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의 경우, 행사진행 참여자의 성별분리, 더 나아가 진행 역할에서의 성별분리가 존재하는가? ▶ 문화산업 지원에 대한 예산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산이 집중되는 문화산업의 경우, 특정 성에 더 적합하다는 고정관념은 없는가? ▶ 문화체육 중사자에 대한 처우는 어떠한가, 특히 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인가?
<p>개선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자격조건이나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변화를 고려하였는가? ▶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고용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경력단절 예방 방안은 무엇인가? ▶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이 참여하기 어려운 자격조건이나 기준을 확인하고 조정하였는가? ▶ 남성으로 대표되는 영역의 성별고정관념 완화를 위해 충분한 지원과 여성역할 모델을 발굴하고 홍보하였는가? ▶ 여성 참여가 적은 분야의 여성의 문화 스포츠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지원을 마련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업에 대한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하여 사업을 통한 여성문화예술 중사자의 고용 안정 등 직업 지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 ▶ 여성들이 계속 문화체육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용의 안정성이나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는가? ▶ 문화프로그램의 경우, 일회성 참여가 아니라 지속적인 참여를 통한 전문성 제고가 가능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 미디어, 광고 등에서 나타나는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 지금까지 여성들이 해왔던 문화활동이나 영역에 대한 인정과 문화발굴, 그리고 보존을 위해 현재보다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가? ▶ 문화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여성 문화예술 중사자의 대한 직업 지위 인정 및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추진 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 온라인, SNS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 하고 여성혐오 문화 등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6 의사결정(공공행정)

▶ 1단계 : 성평등 목표의 확인

- 의사결정관련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컨설팅은 다음과 같은 성평등 목표를 준거로 함
 - ① 공직 내 부서배치에서 성별분리 완화
 - ② 여성공무원 역량 강화
 - ③ 의사결정자의 성평등 의식 제고
 - ④ 정치, 행정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 ⑤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근절

▶ 2단계 : 사업의 성별특성 확인

구분	남성집중	여성집중	외형상 성중립
사업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위원회 운영 ▶ 전문인력 운영 및 양성을 통한 공공행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 교수요원 역량 강화,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행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모니터링 ▶ 비정규직센터 운영 지원 ▶ 자원봉사 지원 :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 주민참여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 예산, 시민감사관 ▶ 공무원 교육 : 성인지력 향상교육, 성희롱 방지, 통계전문교육, 인권교육, 공무원 연수 및 해외연수, 친절교육, 민원 조사관 교육 ▶ 공공행정 및 직장문화 : 가족친화 직장문화, 자치행정모니터, 직장분위기 조성, 계약 및 물품관리, 민원도우미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홍보 블로그

구분	남성집중	여성집중	외형상 상징립
<p>사업 사례</p>	<p>▶ 의사결정(공공행정) 영역에서 남성이 다수인 사업은 위원회 등 공공 의사결정 관련 사업이 많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성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자격조건이 필요한 각종 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자격을 요구하는 사업 - 이미 의사결정과정 또는 한 분야를 대표 하는 것은 남성이라는 암묵적 기정이 존재 	<p>▶ 의사결정(공공행정) 영역에서 여성 수혜 자가 다수인 사업은 특별한 자격조건이 요구되지 않으며 여성의 진입이 쉽고 무급 인력으로서의 성향이 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등 임시적인 역할 - 자원봉사처럼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일자리와 같은 보 상은 주어지지 않으며 봉사로서의 성격 	<p>▶ 인사 및 평가: 개방형 임용제, 성과평가시 유연근무 실적 반영, 자체평가·성과평가, 해외도시 공무원 교류, 대체인력</p> <p>▶ 시민의 공공참여: 주민참여예산제, 주민 참여 도시학교, 시정모니터, 시정참여활동 지원, 감사옴부즈만, 민원모니터 활성화, 어린이도의회 운영, 도민평가단, 통장위촉, 대학생 구정참여, 주민자치회 운영, 통반장 관리, 정보공개 청구, 명예군수 운영, 아이 디어뱅크단 운영, 청소년 참여위원회</p> <p>▶ 시설 건립 및 관리: 공무원 연수원 건립, 공무원 청사 관리, 차량관리</p> <p>▶ 공동체 활동지원: 마을공동체 주민교육,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마을학교, 안전한 마을 만들기,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마을공동체 리더 육성</p>
<p>사업의 성별 특성</p>	<p>▶ 의사결정(공공행정) 영역에서 남성이 다수인 사업은 위원회 등 공공 의사결정 관련 사업이 많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성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자격조건이 필요한 각종 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자격을 요구하는 사업 - 이미 의사결정과정 또는 한 분야를 대표 하는 것은 남성이라는 암묵적 기정이 존재 	<p>▶ 의사결정(공공행정) 영역에서 여성 수혜 자가 다수인 사업은 특별한 자격조건이 요구되지 않으며 여성의 진입이 쉽고 무급 인력으로서의 성향이 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등 임시적인 역할 - 자원봉사처럼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일자리와 같은 보 상은 주어지지 않으며 봉사로서의 성격 	<p>▶ 의사결정(공공행정) 영역에서 외형상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사업은 공공 영역과 시민대상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영역의 경우, 외형상 잘 드러나지 않으나 영영, 업무, 역할 등에서 성별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성별분리 현상은 위계적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음 - 시민대상 영역의 경우, 최근 시민의 공공

구분	남성집중	여성집중	외형상 성중립
사업의 성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를 위한 자격조건 자체가 오랜 동안 누적된 성역할 분리로 인해 여성이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인 경우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양적인 참여는 많으나 실제로 의사 결정으로 이어지는는 않으며, 질적인 참여는 낮음 - 여성의 무임노동을 통해 공공사업을 보조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성격 - 자원봉사자와 같은 활동 안에서도 성별에 따른 역할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가 높고 미일공동체 사업처럼 새로운 시민참여 영역이 늘어나고 있으나 그 내에서 수평적, 위계적 분리가 일어날 수 있음. 시민참여 영역에서도 성별에 따른 역할 분리 - 여성참여는 늘어나는 반면, 의사결정 과정의 성별화, 위계적 분화는 지속되는 상황

▶ 3단계 : 원인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체크포인트

구분	남성집중	여성집중	외형상 성중립
원인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혜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모집단에서 남성이 더 많은가? ▶ 그렇다면 어떤 자격조건이 그러한가? ▶ 영역별로 '남성적 영역'이라는 인식 또는 고정관념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어떤 고정관념인가? ▶ 사업 참여를 위한 자격 조건에서 여성들이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이나 기준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 이 분야에 종사하거나 참여하는 여성들의 인력풀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이러한 조건이 여성에게 더 적합한가? ▶ 해당 사업은 '여성적 영역'이라는 인식 또는 고정관념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어떤 고정관념인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고 있는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요구와 의사결정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영역의 경우 - 업무나 역할 등에서 성별분리가 있는가? -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가? - 여성이 참여하기 어려운 자격조건이나 기준이 있는가? - 여성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가? ▶ 시민대상 영역의 경우 - 성별에 따른 역할이나 업무의 차이가 있는가? - 여성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가?

구분	남성진중	여성진중	외형상 성중립
<p>개선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진 승급과정을 통해 지침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비율의 여성정책결정과정 참여가 이루어졌는가?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비율의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참여를 제한하는 자격조건이나 기준을 확인하고 조정하였는가? 위원회 내 뿐 아니라 위원회 간 성별분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각 위원회별 여성비율을 조정하였는가? ▶ 여성인력 발굴을 위해 부서간 연계, 협력 뿐 아니라 지역사회 대학이나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은 가능한가? ▶ 의사결정자에 대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가? ▶ 남성 집중 분야에 종사하거나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 특별한 교육이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 분야의 성별분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자원활동처럼 여성적 일로 간주되는 경우, 사업의 남성참여 확대를 위해 남성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수 있는가? ▶ 해당 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참여자의 지위나 보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들의 정책결정과정의 참여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업무, 부서, 역할 배치 등을 완화할 수 있는가? ▶ 공적 기회에 여성이 참여하기 어려운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는가? 돌봄을 책임지는 사업대상자들을 위해 별도의 지원 등 고려가 가능한가? ▶ 성별에 따른 위계화된 참여방식을 조정하고,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가? ▶ 자원 활동이나 봉사처럼 무급인력으로서 등원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역할에 충분히 보상하고 인정할 수 있는가?

참 고 문 헌

- 김경희·양애경·김들순·송치선·이선민·허라금·한정원. 2009. 『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II) : 성 주류화 실행 모델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동식 외. 2014. 『재난안전관리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 김태홍·양인숙·김영택·황정임·배호중(2012). 『2012년 여성정책수요조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재선. 2015. 『2014 한국의 성인지 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재선·문유경·임연규. 2014. 『2014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여성가족부.
- Booth, Christine and Cinnamon Bennett. 2002. “유럽연합의 성 주류화 : 평등 기회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실천을 향하여”. 김영옥·마경희 편역(2004). 『주류화와 성평등의 논리 : 한국 여성정책의 뉴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편역서』. 여성부.
- EIGE(2012). Gender Equality Index.
- EIGE(2015). Measuring gender equality in the European Union 2005~2012, Gender Equality Index.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4』.
- 고용노동부. 『2014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 통계청 KOSIS www.kosis.kr
- 통계청. 2015.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도자료. 배포일시(2015.6.29.)

Ⅰ 성인지 통계 관련 각종 통계 용어 목록 Ⅰ

분류	용 어	
인구	총조사인구	총 부양비
	연양추계인구	노령화 지수
	장래추계인구	연령별 출산율
	성별 국민평균연령	혼인상태별 인구
	출생성비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유배우당 평균 출생아수
	연령별 인구	국내인구 순이동률
가족	가구	평균초혼연령
	평균가구원수	조혼인율
	가족의 형태별 분포	혼인의 유형
	여성가구주가구 비율	
보육	보육시설 및 아동수	취업여성 자녀의 수탁률 추정치
교육	여교원 비율	진학률
	취업률	학업중단율
	취학률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무급가족종사자
	경제활동인구	시간제 취업자 비율
	비경제활동인구	주당평균근로시간
	실업률	월평균근로일수
	실업자	월평균임금
	취업자	입직률
	상용근로자	이직률
	임시근로자	노조조직률
	일용근로자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용 어	
보건	평균수명	유병률
	연령별 기대여명	유병일수
	성 및 연령별 흡연인구	와병일수
	성 및 연령별 음주인구	재해율
	영아사망률	수진율
	모성사망률	의료인 중 여성비율
	사망률	
복지	국민연금	국민연금 전국민대비 적용률
	국민연금별 수급률	건강보험 전국민대비 적용률
정치 및 사회참여	투표율	자원봉사참여율
	국회의원 여성수 및 비율	종교인구
	지방의회의원 여성수 및 비율	언론종사자
	정당고위당직자여성비율	
문화 및 정보	독서인구	TV 시청률
	공연, 전시참여현황	TV 시청시간
	여가활동방법	비디오시청
안전	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	여성범죄비율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 출처 : 「성인지 통계 소스북(Source Book) 개발 연구」(여성가족부, 2015.11)

인구

연번	항목	내 용
1	총조사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총조사인구 - 범주 : 인구 > 총조사인구 - 정의 :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 및 주택센서스 시점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국인 - 관련조사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연앙추계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연앙추계인구 - 범주 : 인구 > 연앙추계인구 - 정의 :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 및 주택센서스 시점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국인 - 관련조사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연번	항목	내 용
3	장래추계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장래추계인구 - 범주 : 인구 > 장래추계인구 - 정의 :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장래인구의 출생·사망·이동 등 동태율을 고려하여 추계한 인구로 연도별 7월 1일 현재 인구임. - 관련조사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인구주택총조사』
4	성별 국민 평균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성별 국민평균연령 - 범주 : 경제활동 > 성별 국민평균연령 - 정의 : 성별 총인구의 산술평균연령을 계산하거나 중위 연령으로 사용 - 관련조사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추계인구』
5	출생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출생성비 - 범주 : 인구 > 출생성비 * 계산방법 : (남아출생수/여아출생수)×100
6	조출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조출생률 - 범주 : 인구 > 조출생률 - 정의 : 특정인구집단의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의 총 출생아수를 당해 연도 총인(7월 1일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7	연령별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연령별 인구 - 범주 : 인구 > 연령별 인구 - 정의 : 총조사인구 또는 연앙추계인구의 연령별 성별 인구임. - 관련조사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연앙추계인구』
8	총 부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총 부양비 - 범주 : 인구 > 총 부양비 - 정의 : 생산가능연령(15~64세) 인구에 대한 비생산 연령층 인구(0~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합)의 백분비로서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임 - 관련조사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9	노령화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노령화 지수 - 범주 : 인구 > 노령화 지수 - 정의 : 연소층 인구(0~14세)에 대한 노령층 인구(65세 이상)의 비율로서, 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임 - 관련조사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연령별 출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연령별 출산율 - 범주 : 인구 > 연령별 출산율 * 계산방법 : (해당 연령 여성인구의 출산 수/해당연령 여성인구)×100

연번	항목	내 용
11	혼인상태별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혼인상태별 인구 - 범주 : 인구 > 혼인상태별 인구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혼 : 혼인한 사실이 없는 사람 기혼 : 혼인한 사실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배우 :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 무배우 : 사별, 이혼 등으로 혼자 살고 있는 사람
12	합계출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합계출산율 - 범주 : 인구 > 합계출산율 - 정의 : 연령별 출산율의 합계로서 한 사회의 출산수준을 타 사회와 비교할 때 사용함 - 관련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3	유배우당 평균 출생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유배우당 평균 출생아수 - 범주 : 인구 > 유배우당 평균 출생아수 - 정의 : 조사당시 유배우부인의 평균 출생아수를 말함. - 관련조사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4	국내인구 순이동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국내인구 순이동률 - 범주 : 인구 > 국내인구 순이동률 - 정의 : 5년 전 거주지와 조사당시 거주지를 기준으로 시·도 단위 이상 이동한 인구의 해당 시·도 인구에 대한 비율임. - 관련조사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가속

연번	항목	내 용
1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가구 - 범주 : 가족 > 가구 - 정의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를 말하며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함. 일반가구는 혈연가구(통상 가족단위로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가구), 비혈연 5인 이하 가구(친구 또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생활을 같이 하는 가구), 1인가구로 나누어지며, 집단가구는 집단시설가구(기숙사,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등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가구)와 비혈연 6인 이상 가구(혈연관계가 없는 6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동일한 거처 내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가구)로 나눔 - 관련조사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연번	항목	내 용
2	평균가구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평균가구원수 - 범주 : 가족 > 평균가구원수 - 정의 : 가구의 크기를 나타냄 - 관련조사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3	가족의 형태별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가족의 형태별 분포 - 범주 : 가족 > 가족의 형태별 분포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가족 : 부부 또는 부부와 미혼 자녀 - 확대가족 - 직계가족 : 부부+남편의 부모, 부부+미혼자녀+남편의 부모 - 복합가족 : 기혼 방계친족이 동거 - 기타가족 : 위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경우 - 관련조사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4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 범주 : 가족 >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 정의 : 여성가구주의 비율 * 계산방법 : (여성가구주 가구수/총가구수)×100 - 관련조사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	평균초혼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평균초혼연령 - 범주 : 가족 > 평균초혼연령 - 정의 : 15세 이상의 인구 중 5세 간격으로 미혼인구비율을 바탕으로 계산 (Hajnal-methods)한 것으로 상식적 개념의 평균초혼연령이 아님. - 관련조사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6	조혼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조혼인율 - 범주 : 가족 > 조혼인율 * 계산방법 : (연간 결혼건수/연앙인구)×1,000 - 관련조사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7	혼인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혼인의 유형 - 범주 : 가족 > 혼인의 유형 - 정의 : 여성초혼-남성초혼, 여성초혼-남성재혼, 여성재혼-남성초혼, 여성재혼-남성재혼으로 나누어 파악 - 관련조사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보육

연번	항목	내 용
1	보육시설 및 아동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보육시설 및 아동수 - 범주 : 보육 > 보육시설 및 아동수 - 정의 : 어린이를 보호하며 양육하는 곳으로 늘어나는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맞벌이 가정의 자립생활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사회복지분야의 주요 정책 사업으로 보육 사업을 추진함. 가. 국·공립 : 나라에서 지원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는 보육시설 나. 민간 : 민간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보육시설 다. 직장 내 :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직장 내에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보육 시설 라. 가정 : 작은 규모로 가정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보육시설 - 관련조사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	취업여성 자녀의 수탁률 추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취업여성 자녀의 수탁률 추정치 - 범주 : 보육 > 취업여성 자녀의 수탁률 추정치 - 정의 : 25~34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0~5세 아동수를 곱하여 구한 취업모의 자녀수를 분모로 하여 보육시설 원아수로 나눈 추정치

☐ 교육

연번	항목	내 용
1	여교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여교원 비율 - 범주 : 교육 > 여교원 비율 * 계산방법 : (여교원수/총교원수)×100 - 관련조사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2	취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취업률 - 범주 : 교육 > 취업률 * 계산방법 : 취업자/(졸업자 - 진학자 - 군입대자) × 100 단, 졸업자수에는 미상이 제외됨.
3	취학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취학률 - 범주 : 교육 > 취학률 * 계산방법 : 취학적령학생수/취학적령인구수×100

연번	항목	내 용
4	진학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진학률 - 범주 : 교육 > 진학률 * 계산방법 : 각급학교진학자/각급학교졸업자×100
5	학업중단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취학률 - 범주 : 교육 > 학업중단율 * 계산방법 : (제적+중퇴+휴학자수)/재적학생수×100

☐ 경제활동

연번	항목	내 용
1	경제활동참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경제활동참가율 - 범주 : 경제활동 > 경제활동참가율 - 정의 :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계산방법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 관련조사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	경제활동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경제활동인구 - 범주 : 경제활동 > 경제활동인구 - 정의 : 만 15세 이상의 생산 가능한 인구 중 취업자와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의미함. 군인, 재소자, 외국인은 제외. 나라별로 15세 또는 16세를 기준으로 하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학제 및 의무교육기간의 차이에 의한 것임 - 관련조사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3	비경제활동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비경제활동인구 - 범주 : 경제활동 > 비경제활동인구 - 정의 :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모든 사람(학생, 군인, 연소자, 노령자, 장애인, 주부 등) - 관련조사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4	실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실업률 - 범주 : 경제활동 > 실업률 - 정의 :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관련조사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연번	항목	내 용
5	실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실업자 - 범주 : 경제활동 > 실업자 - 정의 :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함 - 관련조사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6	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취업자 - 범주 : 경제활동 > 취업자 - 정의 : 조사대상 기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을 일한 자, 무급가족종사자 경우는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일기, 병, 휴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시적 휴직자 등을 포함. 즉, 취업자 = 조사기간 중 1시간 이상 일한 임금 근로자+자영자+고용주+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우리나라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최소 주 18시간 이상 노동하는 경우를 뜻함 - 관련조사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7	상용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상용근로자 - 범주 : 경제활동 > 상용근로자 - 정의 :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 - 관련조사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	임시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임시근로자 - 범주 : 경제활동 > 임시근로자 - 정의 : 임금근로자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 관련조사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9	일용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일용근로자 - 범주 : 경제활동 > 일용근로자 - 정의 : 임금근로자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 관련조사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0	비정규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비정규직 근로자 - 범주 : 경제활동 > 비정규직 근로자 - 정의 :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1)한시적 근로자, 2)시간제 근로자, 3)비전형 근로자 등으로 분류 - 관련조사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번	항목	내 용
11	무급가족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무급가족종사자 - 범주 : 경제활동 > 무급가족종사자 - 정의 : 자기에게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18시간 이상 도와준 자 - 관련조사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2	시간제 취업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시간제 취업자 비율 - 범주 : 경제활동 > 시간제 취업자 비율 - 정의 : 시간제 취업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간제취업에 관한 통계적 정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보통 주 35시간 이하의 취업자를 시간제취업자로 간주 하는 나라가 많음.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36시간 미만 취업자를 시간제 취업자로 볼 수 있음. 아울러 1992년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된 이후 법정근로기준시간의 70%인 30.8시간 미만을 시간제 취업의 잠정적 기준으로 삼고 있음 * 계산방법 : (시간제취업자수/취업자수)×100 틈틈이 일한다, 주 1~10시간, 11~20시간, 21~30시간, 31~35시간으로 나누어 조사 - 관련조사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3	주당평균 근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주당평균근로시간 - 범주 : 경제활동 > 주당평균근로시간 - 관련조사 : 고용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14	월평균 근로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월평균근로일수 - 범주 : 경제활동 > 월평균근로일수 - 관련조사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5	월평균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월평균임금 - 범주 : 경제활동 > 월평균임금 * 계산방법 : 월평균임금 = 월급여총액+연간특별급여액/12. - 관련조사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6	입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입직률 - 범주 : 경제활동 > 입직률 - 정의 : 전월 말 노동자수에 대한 당월 중 신규채용이나 다른 사업체로부터 전입해 온 자의 비율로 매월의 입직률을 연평균한 것 * 계산방법 : 금월중입직자수/(전월말근로자수 + 금월말근로자수)/2×100
17	이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이직률 - 범주 : 경제활동 > 이직률 - 정의 : 전월 말 노동자수에 대한 당월 중 이직자의 비율로 매월의 이직률을 연평균한 것. * 계산방법 : 금월말 이직자수/(전월말 근로자수 + 금월말 근로자수)/2×100

연번	항목	내 용
18	노조조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노조조직률 - 범주 : 경제활동 > 노조조직률 * 계산방법 : 조합원수/조직대상근로자수×100 - 관련조사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 범주 : 경제활동 >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 정의 :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를 기혼/미혼으로, 기혼일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어릴 때, 자녀가 성장했을 때로 나누어 파악 - 관련조사 : 통계청, 『사회조사』

■ 보건

연번	항목	내 용
1	평균수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평균수명 - 범주 : 보건 > 평균수명 - 정의 : 0세의 기대여명. 즉, 0세에서 그 후 몇 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를 평균적으로 계산한 연수
2	연령별 기대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연령별 기대여명 - 범주 : 보건 > 연령별 기대여명 - 정의 : 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후 몇 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를 평균적으로 계산한 연수 - 관련조사 : 통계청, 『한국인의 표준생명표』 ; 통계청, 『생명표』
3	성 및 연령별 흡연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성 및 연령별 흡연인구 - 범주 : 보건 > 성 및 연령별 흡연인구 - 관련조사 : 통계청, 『사회조사』
4	성 및 연령별 음주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성 및 연령별 음주인구 - 범주 : 보건 > 성 및 연령별 음주인구 - 관련조사 : 통계청, 『사회조사』
5	영아사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영아사망률 - 범주 : 보건 > 영아사망률 * 계산방법 : $\frac{\text{연간 영아(1세 미만) 사망아수}}{\text{당해년 출생아수}} \times 1,000$

연번	항목	내 용
6	모성사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모성사망률 - 범주 : 보건 > 모성사망률 * 계산방법 : $\frac{\text{임신기간과 산욕기간 동안 사망한 임산부}}{\text{연간 출생아수}} \times 1,000$ - 관련조사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7	사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사망률 - 범주 : 보건 > 사망률 * 계산방법 : $\frac{(\text{해당연령}) \text{ 사망자수}}{(\text{해당연령}) \text{ 인구수}} \times 1,000$ - 관련조사 : 통계청, 『한국인의 표준생명표』 ; 통계청, 『생명표』
8	유병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유병률 - 범주 : 보건 > 유병률 * 계산방법 : $\frac{\text{기간내 (2주간) 유병자수}}{\text{0세 이상 인구}} \times 100$
9	유병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유병일수 - 범주 : 보건 > 유병일수 - 정의 : 조사대상 기간 중 유병자의 활동 부자유 지속기간 - 관련조사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 『사회조사』
10	와병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와병일수 - 범주 : 보건 > 와병일수 - 정의 : 조사대상 기간 중 질병으로 누워 있었던 평균일수 - 관련조사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 『사회조사』
11	재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재해율 - 범주 : 보건 > 재해율 * 계산방법 : $\frac{\text{재해자수}}{\text{적용근로자수}} \times 1,000$ - 관련조사 : 고용노동부, 『여성과 취업』
12	수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수진율 - 범주 : 보건 > 수진율 * 계산방법 : $\frac{\text{연간 진료 건수}}{\text{연평균 적용인구}} \times 1,000$ - 관련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통계연보』
13	의료인 중 여성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의료인 중 여성비율 - 범주 : 보건 > 의료인 중 여성비율 - 정의 :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중 여성비율 - 관련조사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 복지

연번	항목	내 용
1	국민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국민연금 - 범주 : 복지 > 국민연금 - 정의 : 국민의 기본생활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급선무로 시작하여 가입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2	국민연금별 수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국민연금별 수급률 - 범주 : 복지 > 국민연금별 수급률 - 정의 : 국민연금 가입자중 연금혜택을 받은 수급자. * 계산방법 : 국민연금수급자수/국민연금가입자수×100 - 관련조사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3	국민연금 전국민대비 적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국민연금 전국민대비 적용률 - 범주 : 복지 > 국민연금 전국민대비 적용률 * 계산방법 : (가입자수/당해연도 총인구수)×100 - 관련조사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4	건강보험 전국민대비 적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건강보험 전국민대비 적용률 - 범주 : 복지 > 건강보험 전국민대비 적용률 * 계산방법 : 가입자수/당해연도 총인구수×100 - 관련조사 : 건강보험연합회, 『건강보험통계연보』

☐ 정치 및 사회참여

연번	항목	내 용
1	투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투표율 - 범주 : 정치 및 사회참여 > 투표율 - 정의 : 최근 주요선거의 투표율을 중심으로 함 - 관련조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총람』 ; 『국회의원선거총람』 『지방의회의원선거총람』
2	국회의원 여성 수 및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국회의원 여성수 및 비율 - 범주 : 정치 및 사회참여 > 국회의원 여성수 및 비율 - 관련조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총람』

연번	항목	내 용
3	지방의회의원 여성 수 및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지방의회의원 여성수 및 비율 - 범주 : 정치 및 사회참여 > 지방의회의원 여성수 및 비율 - 관련조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의회의원선거총람』; 『시, 군, 구의회의원 선거총람』
4	정당고위 당직자 여성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정당고위당직자 여성비율 - 범주 : 정치 및 사회참여 > 정당고위당직자 여성비율 - 정의 : 당무위원, 당원, 지구당위원장 수준임 - 관련조사 : 각 정당
5	자원봉사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자원봉사참여율 - 범주 : 정치 및 사회참여 > 자원봉사참여율 * 계산방법 : 자원활동자수/15세 이상 조사인구×100 - 관련조사 : 통계청, 『사회조사』
6	종교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종교인구 - 범주 : 정치 및 사회참여 > 종교인구 * 계산방법 : 종교인구/15세 이상 조사인구×100 - 관련조사 : 통계청, 『사회조사』
7	언론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언론종사자 - 범주 : 정치 및 사회참여 > 언론종사자 - 정의 :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의 인력을 성별로 조사. - 관련조사 : 한국언론재단, 『한국신문방송연감』

☐ 문화 및 정보

연번	항목	내 용
1	독서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독서인구 - 범주 : 문화 및 정보 > 독서인구 - 정의 : 1년간 1권 이상의 책(주간지, 월간지 등 잡지류는 포함하고 교과서, 참고서는 제외)을 읽은 사람의 비율 * 계산방법 : 독서인구/15세 이상 조사인구×100 - 관련조사 : 통계청, 『사회조사』

연번	항목	내 용
2	공연, 전시참여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공연, 전시참여현황 - 범주 : 문화 및 정보 > 공연, 전시참여현황 - 정의 : 공연 관람장(음악회, 무용 등), 전시장, 미술관, 영화관 등으로 구분함. * 계산방법 : 음악, 연극, 무용, 영화 관람자수/15세 이상 인구×100 ; 박물관, 미술관 입장자수/15세 이상 인구×100 - 관련조사 : 통계청, 『사회조사』
3	여가활동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여가활동방법 - 범주 : 문화 및 정보 > 여가활동방법 - 정의 : 주말, 공휴일, 휴일의 여가사용방법을 조사함 활동 종류는 감상, 관람, TV시청, 창작적 취미오락, 잡기 및 승부놀이, 스포츠 및 여행, 가사등임, 창작적 오락은 회화, 조각, 공예, 서예, 독서, 요리, 사진촬영, 악기연주, 수예, 원예, 꽃꽂이 등임 - 관련조사 : 통계청, 『사회조사』
4	TV 시청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TV 시청률 - 범주 : 문화 및 정보 > TV 시청률 - 정의 : 조사대상 인구 중 1시간 이상 TV를 시청한 사람의 비율임. * 계산방법 : TV시청인구/15세 이상 조사인구×100 - 관련조사 : 통계청, 『사회조사』
5	TV 시청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TV 시청시간 - 범주 : 문화 및 정보 > TV 시청시간 - 정의 : TV시청자의 주당 평균 TV 시청시간임 * 계산방법 : 1주간 총TV시청시간/TV시청인구×100 - 관련조사 : 통계청, 『사회조사』
6	비디오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비디오시청 - 범주 : 문화 및 정보 > 비디오시청 - 정의 : 조사시점 기준 지난 1주 동안 비디오테이프를 집에서 빌려보거나 사서 본 적이 있는 경우 시청가구 비율 및 가구당 비디오 시청편수를 조사하였음 오락용 : 외화, 방화, 만화영화 등 교육용 : 영어회화, 바둑 등 * 계산방법 : 비율 = 비디오 시청 가구수/조사대상 가구수×100 - 관련조사 : 통계청, 『사회조사』

안전

연번	항목	내 용
1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범주 : 안전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정의 :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두려움의 정도 지표로 응답범주는 느낀다, 보통이다, 못 느낀다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관련조사 : 통계청, 『사회조사』
2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 범주 : 안전 >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 정의 : ‘밤에 외출 또는 귀가하는 경우 집 근처에서 혼자 걷기가 두려운 곳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여 ‘1.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구한 것이며 두려운 곳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에게는 부득이 밤에 나갈 일이 있거나 늦게 들어올 경우 주로 어떻게 하는지의 방법을 조사함 * 계산방법 : 야간보행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수/15세 이상 조사인구×100 - 관련조사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3	여성범죄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 여성범죄비율 - 범주 : 안전 > 여성범죄비율 * 계산방법 : 여성범죄자수/총범죄자수×100 - 관련조사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을 위한 안내서

2016년 1월 인쇄

2016년 1월 발행

발행인 : 강은희

발행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6172

인쇄처 : 중앙기획·인쇄

전화 / 02-736-2866~7
